개인금융채권이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2022. 3.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 1. 목적 |
|-------------------------|
| 2. 정의 |
| 3. 적용범위 |
| 4.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채무자 등의 책무 |
|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6.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
| 7.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제한 |
| 8. 주택경매 예정의 사전통지 |
| 9.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
| 10.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제한 |

| 11. 채권양도 예정의 채무자 앞 통지 |
|-----------------------|
| 12. 채권 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평가 |
| 13. 채권양도내부기준 |
| 14.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의 관리 |
| 15.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 |
| 16. 소멸시효 완성의 통지 |
| 17. 시효 이익의 포기 |
| 18. 추심이 제한되는 채권 |
| 19. 추심의 통지 |
| 20.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 21. 추심연락의 유예 |

| 22. 추심연락의 유형 제한 요청 |
|---------------------|
| 23. 채권추심자의 고지 의무 |
| 24. 채권추심내부기준 |
| 25. 추심 위탁의 통지 |
| 26. 추심 위탁의 제한 |
| 27.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평가 |
| 28. 추심 위탁 계약서 |
| 29. 추심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
| 30.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추심 제한 |
| 31.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등 |
| 32.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관리 |

| 33.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채권 양수 제한 |
|------------------------|
| 34.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업무 수행 방식 |
| 35.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
| 36. 채무조정의 안내 |
| 37. 채무조정의 기준 |
| 38. 채무조정내부기준 |
| 39. 채무조정의 요청 |
| 40. 채무조정의 거절 |
| 41. 채무조정의 처리 |
| 42. 채무조정의 효력 |
| 43.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

| 44. 채무조정의 합의 해제 |
|--------------------|
| 45.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 |
| 46. 허가요건 |
| 47. 임직원의 자격요건 |
| 48. 대주주의 변경 승인 등 |
| 49.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 50. 이용자보호기준 등 |
| 51. 영업의 양도·양수 등 인가 |
| 52. 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
| 53. 공고 |
| 54.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 |

| 55. 등록요건 |
|---------------------------|
| 56. 등록증의 발급 |
| 57. 등록의 갱신 |
| 58. 등록부의 공개 |
| 59.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교육 |
| 60. 임직원의 자격요건 |
| 61. 업무총괄 사용인 |
| 62.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 63. 이용자보호기준 등 |
| 64. 총자산한도 등 |
| 65. 영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 |

| 66. 영업의 폐업 신고 |
|---------------------|
| 67.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 |
| 68. 등록요건 |
| 69. 임직원의 자격요건 |
| 70. 준용 규정 |
| 71.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책임 |
| 72.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설명의무 |
| 73. 채무조정에 관한 계약의 체결 |
| 74.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수료 |
| 75. 채무조정교섭업의 수행 |
| 76. 연체유도의 금지 |

| 77. 대리 의사표시의 제한 |
|--------------------------|
| 78. 개인채무자의 재산보관 금지 |
| 79.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이해사충 방지 |
| 80.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광고 |
| 81.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 대한 감독 |
| 82.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 대한 검사 |
| 83.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
| 84.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 |
| 85.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
| 86.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방법 |
| 87. 채무조정교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 88.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
| 89. 임직원에 대한 조치 |
| 90. 손해배상의 책임 |
| 91.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 92. 손해배상의 보장 |
| 93. 행정처분 등의 공표 |
| 94. 상호 |
| 95. 등록수수료 등 |
| 96. 권한의 위임·위탁 등 |
| 97. 규제의 재검토 |
| 98. 벌칙 |

| 99. 벌칙 |
|-----------|
| 100. 벌칙 |
| 101. 벌칙 |
| 102. 병과 |
| 103. 양벌규정 |
| 104. 과태료 |
| |
| |
| |
| |

1. 목적 (안 제1조)

가. 제정 이유

- □ 그간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여 개인채무자 보호에 한계 노출
 - 금융소비자보호법('19.12월 제정) 등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 법제는 모집·계약체결 단계에 치중*
 - * 광고 규제, 설명의무, 대출계약서 내용, 상환능력 심사, 최고금리 제한 등
 -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간 법률관계는 대등당사자 관계를 전제로 민법과 약관에 따라 규율
 -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 및 협상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 □ 별도의 공적 규율이 미약한 가운데 금융권은 배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연체채권관리 관행을 형성
 - 채무자별 상환능력 등 차별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전략이 아닌모든 채무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강도의 추심을 적용
 - 이는 채무자의 추심고통을 배가시키고 상환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채권자의 장기적 회수에도 부정적 영향
- □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가 호혜적·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체계적 규율체계 마련 필요

나. 제정 내용

- 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과 관련한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화
 - 연체발생 이후 기한의이익 상실, 연체이자 부과, 소멸시효 관리, 채권 매각, 추심 및 채무조정 등의 과정에 있어 개인채무자 보호원칙 확립

| ②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의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율 |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통해 규율 대상 범위를 논의 |
| ○ 입법예고된 정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이견 또는 특이이슈 없음 |
| □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기존 대부업법 관련 내용(대부업, 대부중개업 포함)을 다시 분리하여 별도로 잔존시키는 것으로 검토 |
| 라. 입법효과 |
| □ 채권금융기관-개인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규율하여 개인금융관리를 체계화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 금융권,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법안 마련 |
| |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 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 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 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한다.

2. 정의 (안 제2조)

가. 제정 이유

□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 대부업법 및 신용정보법 정의조항 중 필요한 정의사항을 이관함

나. 제정 내용

- ① 채권금융기관(제1호) : 이 법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보호책임 등 의무수범의 주체가 되는 금융회사
 - ① (대출기관) 직접 대출 등 신용공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 * 은행, 여전, 저축,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여신금융기관 등
- ② (공공기관) 대출 등 신용공여 또는 지급보증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 산은, 기은, 신보, 기보, 지역신보, 농신보, 주금공, 무보 등
- ③ (기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
 - * 채권매입추심업자, 자산유동화회사 등
- ② 개인금융채권(제2호) : 채권금융기관이 금전의 대부, 대위변제, 채 권의 양수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
 - ① (금전의 대부) 대출을 포함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자금대부 행위를 통칭*
 - * 어음할인 양도담보 신용카드 발행 연불판매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 포함
 - ② (대위변제) 금전채무의 대위변제를 통해 개인채무자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행위
 - 보증제공자는 대위변제를 통해 금전대부기관으로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여 채권금융기관 지위(=구상채권자) 취득

- ③ (금전대부채권 또는 대위변제채권의 양수) 개인금융채권의 매입을 통해 개인채무자에게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행위
 - 판례는 양도채권의 원채권과의 동질성을 인정하므로, 채권양수인도 원채권자와 동일하게 채권금융기관 지위 유지
- ③ 추심(제3호): 연체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재산조사·상환의 촉구 ·상환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
 - 정상채권(=未연체채권) 회수는 추심의 본질인 권력적・강제적 회수 요구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규제대상 추심 범위에서 제외
 - ▷ 기존 신용정보법* 및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 정의 통합
 - * 신정법 §2-10호 : <u>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에 대한</u>... (중략)...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
 - ** 채권추심법 §2-4호 : 채무자에 대한 <u>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u>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
- ④ 채권추심자(제4호): 이 법에 따른 추심행위규제를 적용받는 대상
 - 채권금융기관(=자기채권추심자), 채권수탁추심업자 및 위임직 채권 추심인(=수탁채권추심자), 채권매입추심업자(=양수채권추심자) 및 다른 법령에서 채권추심 수행권한을 부여한 자
- ⑤ 채권수탁추심업(제5호)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대상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
 - * ①이 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②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③판결에 따른 민사 채권 ④특별법상 조합원·공제조합 채권 ⑤ 기타 여신·보험 관련 금전채권
 - 채권수탁추심업을 하려면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제6호 채권수탁추심업자)
 -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타인 에게 위탁(=위임직채권추심인)할 수 있음
 - ⇒ 기존 신용정보법상 정의와 동일

- [6] 채권수탁추심업자(제6호): 제45조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 7 채권매입추심업(제7호): 개인금융채권 및 그 밖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
 - ㅇ 기존 대부업 중 매입추심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 業으로 신설
 - 개인금융채권 및 법인에 대한 대부계약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행위가 업무범위
 - 대부채권 뿐 아니라 대위변제채권, 유동화채권 등 개인금융채권 매입행위 전반을 영업행위 범위(=규제 적용대상)에 포함
- 图 채권매입추심업자(제8호): 제54조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을 한 자
- ⑨ 채무조정(제9호):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권에 대하여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상환 등을 통해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 ➡ 서민금융법 제73조 참조
 - * 서민금융법 §73(채무조정의 방법) 1~6호: 1.상환기간 연장, 2.분할상환, 3.이자율 조정, 4.상환 유예, 5.채무감면, 6.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回 채무조정교섭업(제10호):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을 대행·지원*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것
 - * ①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ㆍ제출
 - ②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확인
 - ③ 채무조정 내용의 검토•협의
 - 이 법에 따라 제도화되는 채권자-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 業으로 신설
- Ⅲ 채무조정교섭업자(제11호): 제67조에 따라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을 한 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주체(개인채무자, 채권금융기관,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와 대상 (개인금융채권)을 정의하여 규율범위를 명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 하면서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은행법」

제2조(정의)

-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양수(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 나. 여신금융기관
-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10의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 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 도 받은 자
-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

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상환기간 연장
- 2. 분할상환
- 3. 이자율 조정
- 4. 상환 유예
- 5. 채무감면
-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3. 적용범위 (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 □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행사 절차 및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
- □ 그러나, 담보부채권의 경우 채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우선 변제권으로서의 담보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위헌소지 존재
 -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일부 조항은 담보부채권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여 채권자-채무자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
- □ 또한, 고액채권에 대해서는 이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

나. 제정 내용

- 1) 담보부 채권 관련
- □ (적용대상)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
 - * 불완전담보부대출(담보가치<채권금액)의 경우 담보로 보장되는 부분만 담보 부채권에 포함하고, 비보장되는 부분은 무담보채권으로 간주
 - 실무상 '담보부채권'의 범주 및 종류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담보부채권'이라고만 쓸 경우 해석이 불분명해지는 문제
 - 이에 법원 개인회생時 인정하는 담보부채권의 범위(채무자회생법 §579-1호-가)를 준용하여 해당 채권만 담보부채권으로 인정
- □ (적용내용) 상기 담보부채권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 적용 배제
 - 채무조정 협상 종료 前 기한의이익 상실 차단 (§6④)

- 담보대출은 채권회수가 담보물 처분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 권익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점* 고려
- * 종래에는 기한의이익 상실 후 원금전체에 연체가산이자가 붙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7(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제한) 신설로 해당문제 해소
- ② 채권양도 前 이자채권 면제(§9①) 및 분쟁중 채권,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채권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10①) 의무
 - 담보부채권은 채권자가 바뀌어도 추심의 질이 사실상 동일* (담보권 행사를 통해 채권회수)한 바 채권매각을 제한할 실익 낮음
- * 매각 이후 담보가치가 급락하여 무담보화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이미 일어난 매각의 효력을 환원시키는 것은 과도
- 담보대출의 연체이자는 무담보대출과 달리 채권자가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므로 무조건 면제는 재산권침해 소지
- ③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및 소멸시효 완성 통지 의무(§14, §15, §16)
 - 담보부채권은 연체기간과 무관히 담보권 행사기회가 항시 존재 하므로 항상 소멸시효 연장 실익이 존재함을 감안

2) 고액채권 관련

- □ (적용대상)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금융채권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채권의 평균 원금(3천만원) 등을 감안
- □ (적용내용) 기존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운영되어 오던 규제 外 신규 규제에 대해서는 고액 채권에 대해 적용 배제
 -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6), 연체이자의 제한(§7), 장래 이자채 권의 면제(§9), 채권양도 관련 규정(§10~§13), 채무조정 관련 규정(§35~§44)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일부 조항은 담보부채권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여 채권자-채무자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 □ 고액 채권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최소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 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 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 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 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운영에 과한 사항
- 2.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4.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채무자 등의 책무 (안 제4조)

| 가. 제정 여 | 기유 |
|---------|----|
|---------|----|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 | 호에 관한 부 | 법률」의 | 주요 |
|--------------------------|---------|------|----|
| 규율 대상인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의 | 기본적인 | 책무를 | 규정 |
|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명확화 | | | |

나. 제정 내용

| 채권금융기관은 | 개인채무자의 | 권익을 침해하지 | 않고, 개인채무자는 |
|---------|---------|----------|------------|
| 개인금융채권의 | 요청에 성실히 | i 협조해야 함 | |

| 또한 정부도 | 채권금융기관 | 반과 개인처 | 태무자의 | 권리・의 | 리무가 | 균형을 |
|---------|---------|--------|------|------|-----|-----|
| 달성할 수 있 | [도록 정책적 | 노력 필요 | }_ | |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가 이 법을 준수함에 있어 지켜야할 기본적인 책무를 명확히 인식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 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 1.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 2.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 3.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 4.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 5.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 6.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5. 다른법률과의 관계 (안 제5조)

가. 제정 이유

□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새로운 규율을 창설하는 바, 기존 법률과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

<참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내용 관련 타법률 규율 사항>

- ◇ 민법(연체채권 관리 일반): 기한의 이익(§153, §387), 연체이자(§379, §397), 채권의 양도(§449~§452), 소멸시효(§162~§184) 등
- ◇ 채권추심법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과 관련
- ◇ 캠코법, 자산유동화법 : 캠코, 자산유동화기구 등은 특별채권매입추심기구로서 소관법률에 따라 채권매입 및 추심 가능. 제5장(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관련 업종) 관련
- ◇ 은행법 등 금융업권법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관련 규율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법과 업권별 표준약관을 적용. 중첩여지 거의 없음

나, 제정 내용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기준(§6~§17)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
 - 단, 다른 법률에서 이 법보다 개인채무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 개인금융채권의 추심(§18~§34)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
 - ㅇ 단,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채권추심법 규율 적용
- □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39~§44)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특이사항 | 없음 |
|----|------|----|
| 라. | 입법효과 | |

□ 금융회사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에 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 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안 제6조)

가. 제정 이유

- □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의 방어권에 치명적 영향*을 초래하는 조 치임에도, 현재는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 치할 수 있어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균형을 저해
 - * [기한의 이익 상실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
 - ① 연체가산이자 급증 : 상환일 미도래분을 포함하여 원금전체에 가산이자 부리
 - ② 채권추심 본격화 : 채권자의 추심위탁 및 추심인 방문 독촉 등 개시
 - ③ 강제집행: 채권자에게 즉시회수권한이 생기므로 법원에 강제집행 청구 가능
 - 현재 채권자는 연체발생시 채무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연체 후 일정기일* 도과시 요식적인 통지를 거쳐 기한이익 상실 처리
 - * 주담대 : 연체 60일, 기타채무 : 연체 30일
- □ 연체 발생은 채무자의 책임이므로 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것은 민사관계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대출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는 보다 강화된 채무자보호 책임이 필요
 - 금융회사는 대출 당시 채무자의 부도위험을 평가하여 연체관리 비용을 이미 금리에 先반영 → 연체관리책임 성립
 -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연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조정 등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선행한 후 기한이익 상실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

<참고 : 해외 유사사례>

- ◇ 영국 : FCA Consumer Credit SourceBook
 - 채권자는 연체채무자와 문제해결을 적극 모색할 의무(Forbearance)가 있으며,
 연체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완료하기 전에는 기한이익 상실(Termination) 불가능
- ◇ 독일 : 민법 소비자대차 章 (Verbraucherdarlehen)
- o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예정 통지 전 최소 1회 채무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의**해야 함

나. 제정 내용

□ 채권금융기관은 연체를 이유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 키려는 경우, 상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조정 신청 기회 등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함(§6①)

[기한이익 상실 전 채무자 앞 사전통지 내용 : 제6조제1항 각 호]

- ① 기한의 이익의 상실일 ② 기한의 이익의 상실 원인 ③ 기안의 이익의 상실 효과
- ④ 채무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통지가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을 경우, 도달한 날부터 10 영업일이 도과한 날을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로 간주(§6②)
 - ㅇ 시행령을 통해 통지 방식 등을 구체화
 - 채권금융기관이 통지하였음에도 반송 등으로 통지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오랜기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 등을 통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6③)
- □ 채권자의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기간 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심사기간(from 채무조정 요청접수 to 심사결과의 채무자 통보) 중에는 기한이익이 유효한 것으로 봄(§6④)
 - 법률에서 직접 유지效를 부여하므로, 채권자가 임의로 기한이익을 상실처리하더라도 동 조치는 당연무효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 ※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과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일반적 채무조정 요청 절차를 준용 (➡) 제39조 ~제44조 후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 채권자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전에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기한이익의 자동상실 방지
- □ 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로 부담이 급증하기 전에 채무를 조기 정상화하고 장기연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 장하지 못한다.

-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독일 민법>

Section 498 Calling in entire loan in the case of loans repayable in instalments

With regard to a loan that is to be repaid in instalments, the lender may only give notice of termination on account of the default in payment of the borrower if

- 1. the borrower is in default in the payment of at least two consecutive instalments in whole or in part and by at least ten per cent, in the case of a consumer credit agreement running for more than three years by at least five per cent, of the nominal amount of the loan, and
- 2. the lender has without result given the borrower a period of two weeks for payment of the amount in arrears and has declared that in the case of failure to pay within the period, the lender will demand the entire residual debt.

At the latest when the lender specifies a period of time, the lender is to offer to the borrower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an arrangement by mutual consent.

7.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제한 (안 제7조)

가. 제정 이유

- □ 연체가산이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을 의미(민법 §397)
 - 현재 금융권은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채무의 경우 원금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보아 원금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중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 그런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하여 채무원금전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측면
 - 손해는 약정한 현금흐름의 미실현에 따른 '기대이익의 훼손'과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추심 실비용'으로 구분 가능
 - 연체가산이자는 연체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기대현금흐름 훼손에 대한 손실보전 성격인데,
 -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 당초기한이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기대이익의 훼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기한의 이익 상실여부와 무관히 채권자에게 실제 발생한 현금흐름손실분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도록 제도개선

나. 제정 내용

- □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 중 당초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 부과 가능(§7①)
 - * 연체를 사유로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만 해당
 - 단, 채권의 관리 및 회수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발생한 실비용*은 연체가산이자와 별도로 채무자에게 부과 가능(§7②)

- * 금융회사가 발생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비용만 청구 가능 (→실비용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 청구하는 행위 방지)
- 당초 약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연체가산이자는 무효(§7②)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연체가산이자 수취 제한에 위헌소지가 있는지 검토
 - (위헌설) 금융회사에게만 연체가산이자 수취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15) 등 위반이라는 주장
 - (합헌설) 권리제한의 정도가 제한적인 점, 과거 이자부과제한 법률에 대한 판례 태도** 등을 고려시 위헌이라 보기 어려움
 - ** [2000헌바7-이자제한법의 위헌여부] 입법자가 사인간의 <u>약정이자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u>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u>자금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유와 창의에 기한 경제발전을 꾀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보호문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맡길 것인가는 입법자의 위와 같은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후략)</u>
 - '이자수준의 제한'은 판례에서 보듯 입법재량의 문제이며, 동 조항은
 약정이자를 허용하는 등 입법재량의 남용소지를 최소화한 바 위헌으로 보기 어려움

라. 입법효과

□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부당한 연체부담 증대를 최소화하여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재기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해외사례 : 뉴질랜드 Credit Contract and Consumer Finance法>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해 **당초 변제기보다 상환의무가 앞당겨진 채무**에 대해 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함**

Section 41 (2B) **The higher rate** referred to in subsection (2) **may not be imposed on any amount that becomes payable earlier** as referred to in subsection (2A).

※ 참고 조문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8. 주택경매 예정의 사전통지 (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 주택의 경매신청은 채무자의 주거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임에도, 현재는 채권자가 연체채무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채무자의 생존권을 저해 가능
 -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기회를 부여하여 채무자가 주거권을 지키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

나. 제정 내용

- □ 채권금융기관은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해 일정한 주택*의 경매를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조정 신청 기회 등을 채무자등에게 사전 통지해야 함(§8①)
 - * 개인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주택경매신청 전 채무자등 앞 사전통지 내용]

- ① 경매신청대상 주택 ② 경매신청 예정일
- ③ 채무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채무자가 주택경매를 당하기 전에 채무조정 협상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경매신청은 경매신청 사유발생일 후 일정기간 경과(시행령 예시 : 2개월) 후부터 할 수 있도록 함(§8②)
 - * 실무상 채권자는 기한의이익 상실예정일(연체 후 60일) 통지와 주택경매 예정일(연체 후 120일) 통지를 동시에 발송할 것으로 예상
 - → 채무자는 경매가 신청되기 전에 최소 60일 이상 채무조정을 준비하여 채권자와 협의할 시간 확보
- □ 통지가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을 경우,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도과한 날부터 경매신청 가능(§8③)

| □ 채권금융기관이 통지하였음에도 반송 등으로 통지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오랜기간 경매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 등을 통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8④) |
|--|
| □ 채권자의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기간 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심사기간(from 채무조정 요청접수 to 심사결과의 채무자통보) 중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음(§8⑤) |
| ㅇ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경매신청 가능 |
| ※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과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일반적 채무조정 요청 절차를 준용 (□〉 제39조 ~제44조 후술)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부여하여 채무자가 주거권을 지키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해외 입법례 |
| <해외입법례: 미국 CFPB Mortgage Service Rule 2016> <> 주담대 연체 45일 도과 前 채권자의 채무조정 협상안(Loss mitigation Plan) 제시 의무화 → 협상 결렬시에도 연체 120일 이후부터 경매절차 개시 허용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기한의 이익의 상실일
- 2. 기한의 이익의 상실 원인
-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효과
- 4. 채무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사용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일까지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되기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것으로 본다.

9.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안 제9조)

바. 그 밖의 참고사항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가. 제정 이유 |
|--|
| □ 채권금융기관이 회수가능성을 낮게 보아 상각한 채권임에도 매각 과정에서 이자가 지속적으로 불어나면서 채무자 피해 유발 |
| 나. 제정 내용 |
| □ 금융회사가 상각채권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채권 양도 전에 추가 이자 부과를 중단*하도록 의무화(§9①) |
| * 법문상으로는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한다고 표현 |
| 금융회사가 스스로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상각한 채권이 매각을 고리로 하여 계속하여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
| □ 이러한 양도계약을 체결시 채권금융기관은 이를 개인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9②)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채권의 양도를 계기로 연체이자의 증가가 중단되도록 하여 연체 부담의 무한한 증식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27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분쟁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채권이 불건전한 양도인에 재매각되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를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 |
| □ 채권의 양도를 계기로 연체이자의 증가가 중단되도록 하여 연체 부담의 무한한 증식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 해외 사례 |
| <참고 해외사례 : 미국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개정안(19.5월)> |
| ◇ 채무조정중 채권, 파산채권, 명의도용대출채권 등에 대한 매각 및 추심 금지 §1006.30 b) prohibition on the sale, transfer, or collection of certain debts (i) paid or settled (ii) discharged in bankruptcy |

(iii) identity theft report filed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매입·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제15조(매각 제한 채권)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채무자와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채권을 사전에 확인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2.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단, 상속절차 완료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채권은 제외)
 - 3. 채권의 존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 중인 채권
 - 4.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예 : 원인서류 부존재, 명의 도용 및 사기대출에 의한 채권, 채권·채무관계 관련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 ② 금융회사는 매각하는 채권이 채권 매각 시점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 매각 이후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환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매각계약서) ③ 금융회사는 채권의 재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매각이 불가한 기관 및 기간(예 : 3개월)을 매각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 매입기관이 재매입 기관에 대하여 실사(due diligence)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0.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제한 (안 제10조)

가. 제정 이유

- □ 그간 추심규제정책은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개별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데 집중(채권추심법,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 이에 따라 물리적 위협 등이 동반된 불법적 추심행위는 상당부문줄어드는 등 추심질서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 □ 다만, 연체채권의 외부화 관행*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연체채권은 금융권에서 매입대부업체로 이전되는 현상이 만연
 - *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건전성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공 • 사 NPL 매입펀드 등 육성 → 금융회사 자체 추심조직 축소 및 채권 매각 일반화 → 매입추심대부업체 등장 및 활성화
- ** 일반적으로 연체초기 자체추심 → 채권 상각시점(통상 연체 1년) 전후 매각
 - 채권매각 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약한 바, 금융회사는 매입 업체의 소비자보호 역량 등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손쉽게 채권을 매각 가능
 - 이에 따라 채무자는 원채권기관에 비해 강화된 추심압력에 노출되고.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도 저해
- □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무자가 느끼는 추심부담은 동등할 수 있도록 원채권자의 사전・사후적 책임 강화 추진

※ 제10조 : 양도대상 채권의 제한

※ 제11조 : 채권매각 전 전치적 채무조정 절차

※ 제12조 : 채권양도시 양수인에 대한 평가

※ 제13조 : 채권양도절차 관련 내부기준 마련 의무

<참고 : 대출채권 매각시장 현황>

※ 채권매입추심업자 이외의 매입물량은 미포함 (예 : 자산유동화회사, 캠코)

- ◇ '19년말 현재 **매입채권 잔액**은 **4조 6,930억원***(원금기준 40.5조원)
 - o 채무건수는 465만건 (1인 평균 채무보유건수로 환산시 약 164만명)
 - o 매입된 채무원금은 40.5조원 (전체 가계신용잔액 대비 약 2.7%)
- ◇ 평균 채권매입가격률은 15.2%(`19년말)

(단위: 만명, 억원, %)

| | 해당 | 상 월말 잔역 | 색 | 최초 매입시 | | | |
|-------|-------|---------|---------|------------|------------|--------------|--|
| 구 분 | 거래자수 | 매입가 | 액면가 | 매입가 (A) | 액면가 (B) | 매입률 (A/B) | |
| '19년말 | 464.7 | 46,930 | 405,138 | 75,365 | 496,259 | 15.2 | |
| ′18년말 | 404.9 | 42,783 | 362,740 | 71,031 | 456,991 | 15.5 | |
| '17년말 | 388.0 | 39,612 | 349,226 | 66,861 | 456,173 | 14.7 | |

나. 제정 내용

- □ 채권금융기관은 양도될 경우 채무자 권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다음 각 항의 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안 됨(§10①)
 - ①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할 경우 새로운 채권자에 의해 시효 부활 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에게 피해발생 가능
 - ② (사적채무조정 진행중 채권)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무자의 협상 상대방이 갑자기 바뀌어 채무자의 신뢰보호 이익을 저해
 - ③ (신복위절차 진행중 채권) 매각할 경우 ①과 동일한 문제 발생
 - ◆ (채무자사망 후 상속인 미정채권) 새로운 채권자가 채무자가 미확정된 사정을 모르고 추심을 개시해 부당한 피해자 양산 우려
 - 5 (채권존부 소송 진행중채권)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무자의 소송 상대방이 갑자기 바뀌어 채무자의 신뢰보호 이익을 저해
- □ 채권금융기관은 국가, 지자체, 채권금융기관,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 가능(§10②)
 - * (예) 자산관리공사, 예보, 정리금융회사, 농협자산관리 :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아니지만 근거법률에 따라 채권매입 및 추심을 할 수 있는 기관
 - 미등록 대부업자·매입추심자(=불법사금융업자)가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 기존 대부업법과 내용상 동일하나, 의무수범 대상을 여신금융기관 외 채권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 분쟁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채권이 불건전한 양도인에 재매각되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를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
- □ 채권의 양도를 계기로 연체이자의 증가가 중단되도록 하여 연체 부담의 무한한 증식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해외 사례

<참고 해외사례 : 미국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개정안(19.5월)>

- ◇ 채무조정중 채권, 파산채권, 명의도용대출채권 등에 대한 매각 및 추심 금지 §1006.30 b) prohibition on the sale, transfer, or collection of certain debts
 - (i) paid or settled
 - (ii) discharged in bankruptcy
 - (iii) identity theft report filed

11. 채권양도 예정의 채무자 앞 통지(안 제11조)

가. 제정 이유

- □ 채권자의 변동은 채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임에도, 현재는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균형을 저해
 - * 통상 원채권자보다 추심강도가 높은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채권이 이전
 -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기회를 부여하여 채무자가 원채권자와 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

나. 제정 내용

□ 채권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채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조정 신청 기회 등을 채무자 에게 사전 통지해야 함(§11①)

[채권양도 전 채무자 앞 사전통지 내용]

- ①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②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예정일 ③ 양수 예정인 ④ 채무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통지가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을 경우, 도달한 날부터 10영 업일이 도과한 날부터 채권양도 가능(§11②)
- □ 채권금융기관이 통지하였음에도 반송 등으로 통지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오랜기간 채권양도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 등을 통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11③)
- ※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과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일반적 채무조정 요청 절차를 준용 (□ 제39조 ~제44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특이사항 없음 |
|---|
| 라. 입법효과 |
| □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 인지 없는 채권매각 방지 |
| □ 채무자는 채권이 매입추심업체 등에 매각되기 전에 채무를 정상회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 참고 조문 |

<민법>

-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제29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예정의 채무자 통지) ① 연체를 이유로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

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호는 제외한다.

- 1. ~ 5. (각 호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에서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까지 제44 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 심사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과 등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12. 채권 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평가 (안 제12조)

| 가. 제정 이유 |
|---|
| □ 불건전한 업체에게 채권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채권자기 채권매각시 매입업자의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 필요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금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양수인을 선정하는 경우 중요 사항(시행령에 위임)을 평가에 빈 영하여야 함(§12) |
| 다만, 특정 양수인(예: 국가·지자체, 캠코 등 공적매입기구, 원차 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동 의무 면제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이 내부통제능력을 갖춘 건전한 양수인에게 양도되도록 하여 채권양도로 인한 과잉추심 우려를 완화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히 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해외 입법례

<참고 해외사례 : 미국 통합감독청(OCC) Guideline for Consumer Debt Sale>

- ◇ 은행들은 채권매각업체 선정시 적합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함
 - ㅇ 소비자 민원 동향 및 조치이력 등 매입업체의 과거 평판
 - o 매입업자의 재정적 건전성 및 손해배상채임보험 가입여부
 - ㅇ 매입업자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준수 체계

※ 참고 조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제17조(실사) ①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에 대하여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하고, 실사를 통하여 평가한 매입기관의 리스크를 매입기관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실사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1. 채권추심법 및 이 가이드라인 등 채권추심행위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행정 지도 등 준수 여부
 - 2. 채권추심 가용 인력 및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 3. 매입기관에 대한 소비자 민원 주요내용
 - 4. 매입기관의 인허가 및 등록 현황
 - 5. 매입채권에 대한 재매각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증가시킨 과거 사례
 - 6.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 여부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실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제16조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는 실사에 필요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매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매입기관은 영업기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 원활한 실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실사와 관련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19조(채권 매각) ① 금융회사는 매각 채권의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채권 매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채권을 말한다.

- ②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점에 매각하는 각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별표7>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매입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1. 원금
 - 2. 이자
 - 3. 수수료 등 제반비용
 - 4. 변제기
 - 5. 채권의 발생연월일
 - 6. 소멸시효 완성 여부
 - 7. 연체일자
 - 8.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 여부
- ④ 금융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 산정 및 채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대출계약서, 대출원장, 기타 대출 관계서류 등)를 매입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채권원인서류 제공 시 원인서류에 채무자(보증인) 본인 이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금융회사는 채권매각과 관련된 신용정보를 이 가이드라인, 신용정보법 및 관련 규정,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⑦ 금융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매각된 채권과 관련하여 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사후관리)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매입기관의 재무상황, 규정 준수 여부 및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예: 1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점검을 통하여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채권 매각 후보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13. 채권양도내부기준 (안 제13조)

가. 제정 이유

- □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원채권금융기관의 채권매각 관련 준수절차를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하여 실제 적용되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채권양도 관련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나. 제정 내용

- □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업무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함(§13①)
- □ 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 다음의 사항 포함 필요(§13②)

<채권양도내부기준 포함사항>

- 1.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
- 2. 임직원이 양도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3.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 평가
- 5.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제정 변경 절차
-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로 정하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권금융기관이 법상 채권양도 절차 준수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규화하여 법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 가능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7조(매각 관련 내부통제)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채권 매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의 준수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모든 채권 매각을 통할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금융회사에 매각 주관부서가 다수인 경우, 채권매각 등을 결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부서간 합의를 통하여 담당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임직원 수 20인이하의 금융회사는 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담당부서는 채권 매각과 다른 채권 처리 방법(예: 채권추심회사에 추심 위임, 자체 추심, 대손상각, 경매 등)간의 비용, 편익 및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권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담당부서는 채권 종류에 따른 매각 현황, 매각 가격, 주요 환매 및 민원 현황 등이 경영진 또는 이사회 등에 적시에 충실하게 보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⑤ 담당부서는 채권 매각 실태가 해당 금융회사의 전략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매각전략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의 관리 (안 제14조)

가. 제정 이유

- □ 연체가 장기화되어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인 경우가 많으나, 관행적 시효연장에 따라 시효완성이 지연
- *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Case>
 - ① 연체발생 후 채권행사나 채무상환 없이 5년 경과(상법 §64)
 - ② 연체발생 후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으로부터 5년 경과(민법 §168, §178)
 - ③ 채권자의 지급명령 청구나 채무이행 소송이 인용된 경우, 해당 시점으로부터 10년 경과(민법 §165, §178)
- 통상 채권자는 소멸시효 임박 채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 명령청구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 → 소멸시효가 10년간 연장
- □ 일단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 하지 않을 경우 부활* 가능
 - * ^①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②채무를 상환할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184)에 해당해 시효 부활
 - 채권자 실익 없이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의 고통만 불필요하게 영속화되는 문제 발생

※ 제14조 :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의 관리

※ 제15조 :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 제16조 : 소멸시효 완성의 통지

※ 제17조 : 시효이익의 포기

| 나. | 제 | 정 | 내 | 용 |
|----|---|---|---|---|
|----|---|---|---|---|

| 상각채 | 권 | 등에 | 대해 | 시효 | 를 | 중단 | 또는 | 정지 | 하려는 | 경우 | 대통 | 컹 |
|-----|---|----|----|----|---|-----|------|----|-----|-----|-------|---|
| 령으로 | 정 | 하는 | 바에 | 따라 | 시 | 효연장 | · 필요 | 성을 | 판단해 | 야 함 | (§14)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소멸시효 완성을 의무화할 경우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제기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 동 조항은 채권자가 자체적으로 소멸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 록 하여 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위헌소지 제거

라. 입법효과

□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무부담이 영속화하는 것을 방지 하고 채권-채무 관계의 합리적 종결관행 정착 유도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민법>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1. 청구
 -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3. 승인
-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 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u>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u> 한 때에는 <u>채권은 소멸한다.</u>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u>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u> <u>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u>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 제462조(적용의 요건) <u>금전</u>,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 <u>령을 할 수 있다</u>.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15.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 (안 제15조)

가. 제정 이유

□ 채권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 도록 내부적인 기준마련을 의무화할 필요

나. 제정 내용

- □ 채권금융기관은 소멸시효 중단(연장)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함(§15①)
 -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는 다음의 사항 포함 필요(§15②)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 포함사항>

- 1.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
-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3.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조치를 위한 기준
-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관리방안
- 5.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 6.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제정 변경 절차
- 7.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임직원이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를 완성시킬 경우 배임 등 책임 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명시(§15③)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무부담이 영속화하는 것을 방지

하고 채권-채무 관계의 합리적 종결관행 정착 유도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민법>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다.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1. 청구
 -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3. 숭인

-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 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u>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u> 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 제462조(적용의 요건) <u>금전</u>,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 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 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16. 소멸시효 완성의 통지 (안 제16조)

가. 제정 이유

- □ 일단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 하지 않을 경우 부활* 가능
 - * ^①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②채무를 상환할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184)에 해당해 시효 부활
 - 채권자 실익 없이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의 고통만 불필요하게 영속화되는 문제 발생

나. 제정 내용

- □ 채권금융기관은 소멸시효 완성일*로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함(§16)
 - * 소멸시효의 법적 완성여부는 판결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확인 가능한 날짜인 '소멸시효 완성일'로 대체
 -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한 사항
 - 2 소멸시효 완성일
 - ③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 ◆ 그 밖에 제1호부터 및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개인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환 | 능력을 | 상실: | 한 채두 | 무자의 | 채무부담이 | 영속화하는 | 것을 | 방지 |
|----|------|------|------|-----|-------|-------|----|----|
| 하고 | 채권-> | 채무 🌣 | 관계의 | 합리적 | 종결관행 | 정착 유도 |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민법>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다.
 -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1. 청구
 -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u>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u> 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u>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u> 한 때에는 <u>채권은 소멸한다.</u>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 제462조(적용의 요건) <u>금전</u>,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 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17. 시효 이익의 포기 (안 제17조)

가. 제정 이유

- □ 일단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 하지 않을 경우 부활* 가능
 - * ^①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②채무를 상환할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184)에 해당해 시효 부활
 - 채권자 실익 없이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의 고통만 불필요하게 영속화되는 문제 발생

나. 제정 내용

- □ 개인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상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17①)
 -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시효이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17②)
 - 추후 착오로 채무를 상환(=승인)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소멸시효의 부활을 막기 위함
- ▷ 소멸시효 완성이 실제로 채무의 완전한 소멸로 기능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무부담이 영속화하는 것을 방지 하고 채권-채무 관계의 합리적 종결관행 정착 유도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민법>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1. 청구
 -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

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u>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u> 한 때에는 <u>채권은 소멸한다.</u>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u>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u> <u>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u>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 제462조(적용의 요건) <u>금전</u>,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 <u>령을 할 수 있다.</u>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 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18. 추심이 제한되는 채권 (안 제18조)

가. 제정 이유

□ 그동안 과잉 추심행위 제한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나,

<그간의 채권추심행위 관련 규율강화 연혁>

- ① '09년「**채권추심법」제정 : 모든 채권자의 불공정 추심행위 관련 규제** 원칙 확립(폭행·협박, 공갈, 연체사실 공표 등 과잉추심행위 위주 규율)
- ② '16년 제정된 「채권 추심 및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행위제한이 적용 중
 - 추심행위(1일 2회 초과 방문·접촉 금지 등) 뿐 아니라 추심절차의 공정성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금지, 채무자 접촉전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화 등) 부분까지 상세히 규율
 - 채권추심법의 경우 민사채권자까지 포함하는 공통규율인 관계로, 금융 회사의 채무자보호 책임을 고려한 가중규율은 미비
 - 추심업자 규율법규인 대부업법, 신용정보법은 진입규제 위주로 추심행위 및 절차관련 규율은 사실상 부재
 - 이를 보완하여 금감원 행정지도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에 한계 존재
- ☆ 소비자신용법에서 금융채권의 추심 관련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는 만큼, 금융회사의 채무자보호 책임을 반영하여 보다 강화된 추심행위 및 절차관련 규율 마련 필요

나. 제정 내용

- □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통한 채권회수가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다음 각 항의 채권을 추심해서는 안 됨(§18)
 - 1 (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채무의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추심을 통해 납부를 독촉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

- ② (사적 채무조정 or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진행 또는 확정채권) 채무자가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것이므로 약정을 무시하고 강제로 추심하는 것은 채무자의 신뢰이익 침해
- ③ (채무자사망 후 상속인 미정채권)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추심을 개시하여 부당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
- ◆ (채권존부 소송 진행중 채권) 채권을 추심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심을 중단할 필요
- 5 (채무확인서 미교부 채권) 채권추심자 스스로 정당한 추심권원을 증빙하지 못한 것이므로 추심행위 개시가 부적절
- 6 (채권자변동정보시스템* 미등재채권)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채권 자인지 채무자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심개시는 부적절
- * 개인금융채권의 생성 이후 채권자변동 이력을 신용정보원 시스템에 등재하여 채무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신용정보법 §39의2)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추심이 금지되는 채권의 종류 또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추심 유도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제8조(추심관련 내부통제)** ⓑ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국민행복 기금 신용지원협약 제13조제1항 및 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지 원 여부 확정시까지)
 - 2. 채무자가 채무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3.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전산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조)
 - 4. 채무자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0조제1항 및 제593조제1항)
 - 5.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6.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7.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8. 채무자가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단,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된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19. 추심의 통지 (안 제19조)

가. 제정 이유

□ 추심의 착수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착수 전 추심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필요

나. 제정 내용

-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의 착수예정일 전 추심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함(§19)
 - ㅇ 통지내용, 통지기한 등은 시행령에 위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추심착수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정확한 채무정보를 전달하도록 함 으로써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추심 유도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 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20.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안 제20조)

가. 제정 이유

- □ 개인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 보호를 위하여 해외사례 (미국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를 참조하여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에 대한 제한장치를 강화
 - * 채권추심자(원채권자 제외)의 추심행위를 규율하는 미국판 채권추심법으로서 1977년 제정 (🖒 2019.5월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나. 제정 내용

- □ 채권추심자의 1주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 금지(§20①)
 - 채권추심법이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추심연락을 금지(§9-2호) 하고 있으나, 추심 총량 자체를 제한하지 못하여 과도한 추심연 락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 미흡한 점을 보완
 - 구체적인 추심연락의 기준과 횟수의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20②)
 - * 예) 추심연락횟수의 계산시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여러명의 추심자가 연락을 한 경우 그 연락횟수를 모두 합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추심총량제 신설이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채권추심법에서 이미 추심연락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시 추심 연락제한 자체가 위헌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추심목적 달성을 중대 하게 제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 □ 1주일 7회 초과 연락제한이 도입된다고 하여 추심활동 자체가 불 가능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조항 규제를 위헌으로 보기는 어려움

| 라. | 입법 | 효과 | | | | | | |
|----|----|-----------------|-------|--------|------|------|----|----|
| | | · 추심연락 있도록 보 | | 개인채무자의 | 평온하고 | 인간다운 | 삶이 | 유지 |
| 마. | 국회 | 계류법안 | 과 중복여 | 여부 | | | | |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해외 입법례

<참고:해외입법례>

- ◇ 미국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 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연락하거나, 채무자와 communication

 성공 후 7일 이내에 재연락하는 행위(Frequent Limits) 금지 (`19년 신설안)
- ◇ 태국 채권추심업 감독규정(=채권추심관리위원회 고시)
 - 1일 1회를 초과하는 채권추심 연락 금지
- **채권추심 횟수에 포함되지 않은 연락방법** : **미수신 문자메시지, 부재중 통화**, 상환요구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끊은 전화**

※ 참고 조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 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 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대출채권 매각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제31조(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 다만, 상기 횟수와 별도로 1일 1회에 한하여 추심성격이 전혀 없는 계좌번호 등 단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 등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하는 사항 및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한다.

21. 추심연락의 유예 (안 제21조)

가. 제정 이유

- □ 개인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 보호를 위하여 해외사례 (미국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를 참조하여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에 대한 제한장치를 강화
 - * 채권추심자(원채권자 제외)의 추심행위를 규율하는 미국판 채권추심법으로서 1977년 제정 (🖒 2019.5월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나. 제정 내용

- □ 추심연락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7일 간 추심연락 금지(§21)
 - 1 개인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 2 개인채무자가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상환이 곤란한 경우
 - ③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만,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7일 이내에도 연락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인채무자가 불가피하게 추심연락을 받기 어렵거나 준비가 필요한 경우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추심이 이루어 지고 개인채무자의 평온하고 인간다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중노 | 부법안 | 없음 |
|----|----|-----|------|
| 바. | ユ | 밖의 | 참고사항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해외 입법례

<참고:해외입법례>

- ◇ 미국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연락하거나, 채무자와 communication
 성공 후 7일 이내에 재연락하는 행위(Frequent Limits) 금지 (`19년 신설안)

※ 참고 조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 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 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대출채권 매각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제31조(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 다만, 상기 횟수와 별도로 1일 1회에 한하여 추심성격이 전혀 없는 계좌번호 등 단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 등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사항 및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한다.

22. 추심연락의 유형 제한 요청 (안 제22조) (20. 내용과 중복)

가. 제정 이유

- □ 개인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 보호를 위하여 해외사례 (미국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를 참조하여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에 대한 제한장치를 강화
 - * 채권추심자(원채권자 제외)의 추심행위를 규율하는 미국판 채권추심법으로서 1977년 제정 (➡ 2019.5월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나. 제정 내용

- □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연락수단 등을 통한 추심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22①)
 -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이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시행령 규정)가 아니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함(§22②)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연락제한요청권 신설이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 여 위헌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채권추심법에서 이미 추심연락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시 연락 제한요청권 자체가 위헌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추심목적 달성을 중대하게 제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 □ 연락제한 요청권이 도입된다고 하여 추심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조항 규제를 위헌으로 보기는 어려움

라. 입법효과

□ 과도한 추심연락으로부터 개인채무자의 평온하고 인간다운 삶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보호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해외 입법례

<참고 : 해외입법례>

- ◇ 미국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 o 비통상적 시간 및 채무자에게 곤란한 시간 및 장소에서의 연락금지 (기존)
- 채무자에게 연락제한요청권 부여 (기존)

※ 참고 조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 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 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대출채권 매각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제31조(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 다만, 상기 횟수와 별도로 1일 1회에 한하여 추심성격이 전혀 없는 계좌번호 등 단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 등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사항 및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한다.

23. 채권추심자의 고지 의무 (안 제23조)

| 가. 제정 이유 |
|---|
| □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려는 경우 본인의 추심권한을 제시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 추심환경을 조성할 필요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추심자는 추심연락을 할 때마다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본인의 신분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할 의무(§35③) |
| ㅇ 정보원 또는 탐정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 |
| □ 기존 신용정보법(§27®, §40-5호) 및 대부업법(§10의2)과 동일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채권추심자의 신분과 권한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추심 유도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⑧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24. 채권추심내부기준(안 제24조)

가. 제정 이유

-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추심 관련 준수절차를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하여 실제 적용되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통제기준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함

나. 제정 내용

- □ 채권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채권추심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을 마련할 의무(§24①)
- □ 채권추심내부기준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추가 (§24(2))
 - 1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② 제18조(추심제한 채권)에 따라 추심이 제한되는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 ③ 제27조(채권수탁추심업자의 평가) 및 제29조(추심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채권추심 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 5 채권추심 내부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특이 | [시 | 항 | 없 | 음 |
|------|----|---|---|---|
|------|----|---|---|---|

라. 입법효과

□ 채권금융기관이 법상 채권추심 관련 준수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규화하여 법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 가능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제8조(추심 관련 내부통제) ① 금융회사등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내용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이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야 하다.
 -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회사등임직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관련법규 또는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추심 위탁의 통지 (안 제25조)

가. 제정 이유

□ 채권추심이 위탁되는 경우 채무자의 추심 부담이 증대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개인채무자가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 필요

나. 제정 내용

- □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추심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예정일로 부터 5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 통지해야 함(§25)
 - 종래에는 추심위탁이 이루어진 후 수탁추심회사가 추심에 착수 하려는 때에만 통지의무가 있었으나(채권추심 가이드라인), 통지 의무 발생 시점을 채권추심위탁 이전 단계까지 단축
 - 채권추심이 위탁되는 시점부터 채무자의 부담이 증대되므로 이를 사전에 알고 대비하도록 보호하는 취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 연체된 개인채권이 내부통제능력을 갖춘 건전한 추심업자를 통해 추심되도록 하여 추심의 외부화로 인한 과잉추심 우려를 완화
- □ 추심이 위탁된 이후에도 원채권자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지속 관여 하도록 하여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추심 관련 내부통제) ⑨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는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1일에 통지하는 경우 4일부터 착수 가능)에 착수 사실 및 〈별표2~5〉의 안내사항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LMS 등)로 통지하여야 하며,이 안내사항이 홈페이지에도 공시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상실 또는 계약의 해지 이전에는 통지 없이 연체사실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추심하고자하는 경우 제9항에 따른 통지를 하고 추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제276조 및 제300조에 따라 보전처분을 위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6. 추심 위탁의 제한 (안 제26조)

| 가. 제정 이유 |
|--|
| □ 추심위탁의 경우 법상 허용한 자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위탁추심·과잉추심 우려를 제거할 필요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금융기관의 무허가 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탁 금지(§26) |
| □ 기존 신용정보법(§27의2)과 동일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추심수탁이 가능한 자를 제한함으로써 불법추심·과잉추심 우려 해소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평가 (안 제27조)

가. 제정 이유

□ 원채권금융기관의 추심위탁기관 선정기준에 채무자보호 요소를 반영 하여 건전한 업자 위주로 추심이 수임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나. 제정 내용

□ 채권금융기관을 채권추심을 위탁하기 위해 추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자를 평가하여야 함(§27)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이 내부통제능력을 갖춘 건전한 추심업자를 통해 추심되도록 하여 추심의 외부화로 인한 과잉추심 우려를 완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29조(채권추심 사후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

- 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 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법한 추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채권추심회사는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채권추심 내역을 녹음하고,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채권추심회사는 추심기록부의 세부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채권추심업 종 사자가 추심활동 내역을 동 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또는 감독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별표16>에 따라 채 권추심 활동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저장 매체 로 보고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등 정보유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28. 추심 위탁 계약서 (안 제28조)

가. 제정 이유

□ 추심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탁업자의 의무를 명확히하여 건전한 추심환경 마련 필요

나. 제정 내용

-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계약서 작성 필요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채권수탁추심업 자의 의무,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추심 위수탁 계약서 의무 포함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한 추 심 환경 마련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제23조(수임계약) ② 채권자 및 채권추심회사는 <별표9>의 표준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추심 수임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계약 후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위임업무 내용
 - 2.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 3. 추심하는 채권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 성여부
 - 4. 변제금 수령 간주 사유 등의 추심실적 인정범위
 - 5. 채권추심활동 및 법적절차 진행 소요비용 부담
 - 6. 수수료 등의 지급기준, 시기, 청구 및 지급방법
 - 7. 추심대금 입금방법, 입금계좌, 추심대금 인도방법(입금 기한)
 - 8. 수임채권 해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9. 성실의무, 신용정보의 누설금지, 손해배상, 중복추심의 위임금지에 관한 사항
 - 10. 계약 효력발생일 및 약정기간, 계약변경 · 해지에 관한 사항
 - 11.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관할법원 등

29. 추심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안 제29조) (25. 내용과 중복)

가. 제정 이유

□ 추심위탁 이후 원채권자의 채무자보호 책임이 절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채권자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

나. 제정 내용

- □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가 이 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함(§29①)
- □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29②)
 - 또한, ①항에 따른 점검 및 채무자 민원처리를 위해 일정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29③)
 - ▷ 동 점검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여 수탁추심업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원채권금융기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전가(§90) 되도록 하여 원채권금융기관의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추심이 위탁된 이후에도 원채권자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지속 관여 하도록 하여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제8조(추심 관련 내부통제) ⑨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는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1일에 통지하는 경우 4일부터 착수 가능)에 착수 사실 및 <별표2~5>의 안내사항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LMS 등)로 통지하여야 하며,이 안내사항이 홈페이지에도 공시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상실 또는 계약의 해지 이전에는 통지 없이 연체사실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추심하고자하는 경우 제9항에 따른 통지를 하고 추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제276조 및 제300조에 따라 보전처분을 위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는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9조(채권추심 사후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u>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u> 수시로 확인하고 적법한 추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채권추심회사는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채권추심 내역을 녹음하고,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채권추심회사는 추심기록부의 세부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추심활동 내역을 동 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또는 감독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별표16>에 따라 채권추심 활동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저장 매체로 보고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등 정보유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야한다.

30.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추심 제한 (안 제30조)

| 가. 제정 이유 |
|---|
| □ 기존 신용정보법(§27②, §27⑤)상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행위규제 관련 사항을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수탁추심업자는 그 임직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 이외의 자를 통하여 위탁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30①) |
| * 단, ①임직원의 자격요건(§47①)을 갖추지 못한 자, ②금융위원회에 미등록, ③다른 추심업자 소속으로 등록, ④업무정지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 |
| □ 기존 신용정보법과 동일 |
| □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채권만 추심 가능(§30②) |
| * ①개인금융채권개인금융채권 ②「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③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④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여신이나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
| ▷ 기존 신용정보법과 동일 |
| □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소속 위임직추심인에 대한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추심업무를 재위탁하는 행위 금지(§30③) |
| □ 기존 신용정보법과 동일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일반 | 채권 | 변추심 | 자와 | 구 | 분하여 | 채권수틱 | } ≥ | 추심업자에 | 게만 | 적용되는 |
|-----|----|-----|----|---|-----|------|-----|-------|-----|------|
| 추심히 | 행위 | 관련 | 준수 | 할 | 워칙을 | 명기하여 | | 규제체계 | 명확호 | 화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 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31.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등 (안 제31조)

| 가. 제정 이유 |
|--|
| □ 기존 신용정보법(§27③, §27④, §27⑩, §27⑪)상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및 제재 등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감독 관련 사항을 소비지신용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수탁추심업자는 그 소속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31①) |
| o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시 금융위에 수수료를 내야 함(§31②) |
| □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소속 채권수탁추심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추심업무를 할 수 없음(=1사전속 규제, §31③)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기존 신용정보법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 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2.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관리(안 제32조)

가. 제정 이유

- □ 현재 채권추심법(법무부 소관)에서 채권추심자의 폭력·사기·과잉 연락 등 각종 불법추심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 채권추심법상 처벌 및 제재대상은 직접행위자로 한정되므로, 실무
 상 불법추심행위의 처벌당사자는 대부분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한정
 - 실제 추심업무를 관리 · 지시하는 수탁추심업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임직추심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수탁추심업자에게로 이전'하는 별도조항* 필요
 - * '17.11월 신정법 개정시 채권추심업자에게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법상 의무화(신정법 §27⑨)
- □ 기존 신용정보법(§27⑨) 조항을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이관하여 기술

나. 제정 내용

- □ 채권수탁추심업자는 그 소속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불법추심행 위를 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32)
 - 동 의무 미이행시,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수탁 추심업자에게 행정처분(§84) 및 손해배상(§90) 청구 가능
- □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항의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32)
 -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20(추심연락횟수 제한)·\$21(추심연락 유예)·\$22(추심연락유형제한) 위반: 2천만원 이하 과태료(신설)
 - ② 채권추심법 \$8의3①(채무자소재 문의 외 관계인에 대한 추심연락), \$9(폭력·협박 자행), \$10①(개인정보 누설), \$11-1호(부존재채권 추심), \$11-2호(법원·검찰 등 사칭) 위반 : 5천만원 이

하 과태료

- ③ 채권추심법 \$8의3②(관계인 연락시 신분 및 방문목적 미표시), \$11-3호(법적 권한을 거짓표시), \$11-4호(추심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표시), \$11-5호(타인의 명의 무단사용), \$12(폭력외 각종 불공정추심행위), \$13(부당한 비용청구), \$13의2②(추심비용명세서 미교부)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추심행위규제가 없는 신정법과 달리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일부 추심행위규제가 신설된 바, 위임직추심인의 해당 행위규 제 위반에 따른 책임도 채권추심법 위반 책임과 동일하게 취급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불법추심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강화 유도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⑨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 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 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 2. 채권자의 성명 · 명칭
 - 3.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 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 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 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 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33.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채권 양수 제한 (안 제33조)

가. 제정 이유

□ 불법대부업자 및 매입추심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할 경우 채무자의 피해가 영속될 수 있고, 매입추심업·대부업 시장이음지화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필요

나. 제정 내용

- □ 채권매입추심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매입추심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추심할 수 없음(§33)
 - 불법사금융업자의 채권 양·수도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불법사금 융업자의 대출채권 매매시장 진입을 방지
 - 다만, 불법사금융업자 → 여신금융기관으로의 채권 이전은 채무자 지위개선에 부합하므로 제한하지 않음
 - □ 기존 대부업법과 내용상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불법 대부업, 매입추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대부·추심환경 조성 및 개인채무자 보호 가능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매입·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34.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업무 수행 방식 (안 제34조)

| 가. 제정 이유 |
|---|
| □ 자격있는 임직원이 아닌 자에 의해 채권수탁매입추심업이 운영되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 |
| 나. 제정 내용(채권수탁추심업자의 내용으로 삭제) |
| □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자격있는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업무를 위임 ·대리할 수 없음(§34) |
| ▷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기존의 대부업법 내용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이 법의 규정
-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 8. 삭제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 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안 제35조)

| 가. 제 | 정 이유 |
|------|--|
| | 정법에 새로 도입되는 채무조정제도의 운영에 있어 주요 당사 인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의 기본적인 책임을 규정할 필요 |
| 나. 제 | 정 내용 |
| | 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 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됨(§35①) |
| | 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자신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와 채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35②) |
| 다. 입 | 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 | 이사항 없음 |
| 라. 입 | 법효과 |
| | 무조정시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의 책임을 선언적으로 규 함으로써 채무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 도모 |
| 마. 국 | 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 | ·복법안 없음 |
| 바. 그 | 밖의 참고사항 |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36. 새무소성의 안내 (안 제36조) |
|---|
| 가. 제정 이유 |
| □ 연체 전, 또는 연체초기에 미리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개인채무 자가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연체를 방지할 필요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채권금융기관의 게시 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36①) |
| □ 연체발생 후 단기연체정보를 CB社에 등록(통상 연체 후 5영업일) 하려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함을 안내*(§36②) |
| * 현재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안내(금감원 행정 지도)하고 있는 바, 해당 안내시 채무조정 요청권도 함께 안내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채무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연체 前 또는 연체시 미리 채무자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장기연체로 빠지지 않도록 유도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 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37. 채무조정의 기준 (안 제37조)

| フ | ŀ. | 제 | 정 | 이 | 유 |
|---|-----------|---|---|---|---|
| | | | | | |

□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이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개별 채권 금융기관이 내부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 취지와 방향을 선언적으로 법에 규율할 필요

나. 제정 내용

□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의 상환능력, 개 인금융채권의 회수가능성과 비용, 채권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시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38. 채무조정내부기준(안 제38조)

가. 제정 이유

- □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은 연체된 채권의 속성별로 체계화된 채권회수 또는 채무감면 기준이 부재
 - ㅇ 통상 수탁추심업자가 추심수단으로서 재량을 갖고 채무조정안 마련
 -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아니라 변제성실성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 되게 되어 채무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 유발
 -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채무조정 내용을 결정하게 하더라도, 임직원이 배임소지 등을 우려하여 보수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
- □ 임직원의 보수적 행태를 방지하고 채무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위해 채무자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채무조정기준 마련 필요

나. 제정 내용

- □ (기준 마련방법)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할 절차와 기준(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함(§46①)
- □ (기준의 내용)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마련해야 함(§46②)

<채무조정내부기준 포함사항>

- 1.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인력
-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3.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안내에 관한 사항
- 4. 제37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방법 등에 관 한 사항
- 5.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 (마런방식)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해야 함 (§46③)

○ 임직원이 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집행하면 손실발생에 따른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수적 행태 방지

[참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내부기준

- ◇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가처분소득 3요소를 합산하여 종합감면지수 산출
 - o 연령이 높을수록, 가처분소득이 낮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감면지수 상승
- ◇ 감면지수(0~100점)에 따라 채무감면율(30~60%)을 매칭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무조정 처리시 임직원의 보수적 행태를 방지하고 채무자별 상환 곤란도에 따라 형평성 있게 채무조정 내용을 결정 가능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39. 채무조정의 요청 (안 제39조)

가. 제정 이유

- □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채무조정 시장에서 법원·신복위 등 공적제도 의존도가 크고 채권자 자체적인 조정 프로세스가 미약*
 - *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시장의 급격한 팽창 및 부실누적에 대응 하는 과정에서 공적 제도가 선제적으로 형성된 데에 기인
 - 업권별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나, 채권자의 선별적 지원에 국한될 뿐 채무조정 절차가 채무자의 권리로 보장되지 못함
 - * 외형적인 실적은 우수 (`18년중 전업권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수 43.3만명)
 - → 체감효과는 미약 (35.7만명이 단순 만기연장이며 분할상환 등 상환부담 완화는 미미)
 - □ 반면, 다수의 선진국은 연체채무자의 정상화를 위한 채권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권리로 보**장**

◇ 영국: FCA Consumer Credit Sourcebook

- 채권자는 **연체채무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적극 강구할 의무** (Forbearance rule)
- 채무자가 제시한 **채무상환계획안(Debt Managment Plan)이 합리적이면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할 의무
- ◇ 독일 : 민법 소비자대차 章 (Verbraucherdarlehen)
- o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예정 통지 전 최소 1회 채무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의**해야 함
 - □ 공적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채무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면 채권자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

<참고 : 공적 채무조정과 비교한 채권자 자율 채무조정의 장점>

- ① 신속한 재기모색 가능 : 연체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이용하는 법원 · 신복위 제도와 달리, 채권자가 접점에서 채무자 연체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제도안내 가능
- ② 유연한 조정 : 양자 간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지점에서 다양한 조정안 설계 가능 -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신복위 • 개인회생보다 유리한 조정안 도출 가능
- ❸ 빠른 신용회복 : 당사자 간 1:1 조정이므로 빠른 조정이 가능하고 일단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공공정보 등재 없이 단시일내 연체정보가 해제

나. 제정 내용

- □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신청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요청 불가(§39①)
 - 1 채권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 2 회생, 파산,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③ 사적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일정기간(시행령 위임) 내에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재신청하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시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상 환능력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39②)
- □ 채권금융기관은 필요시 개인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의 수정·보완 요청 가능(§39③)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연체미발생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
 - (긍정설) 연체발생 전부터 문제해결을 지원해야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함으로써 재기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 영국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환곤란을 인지한 시점부터 문제해결에 노력할 의무(forbearance) 발생
 - (부정설) 과도한 채무조정 수요로 인한 채권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연체발생 채무자로 지원대상 한정 필요

라. 입법효과

- □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정책을 '추심을 통한 단기회수 극대화'에서 '채무조정을 통한 중장기회수 극대화'로 전환 유도
 - 연체채무자의 정상화와 채권금융회사의 장기회수 극대화가 공존
 하는 상생의 연체채권 관리절차 정착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 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40. 채무조정의 거절 (안 제40조)

가. 제정 이유

□ 과도한 채무조정 요청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 조정이 축소되거나, 도덕적해이 발생을 막기 위해 특정한 경우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 필요

나. 제정 내용

- □ 다음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요청 거절 가능
 - 채무조정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39①) 각호)
 - ② 개인채무자가 필요한 서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인채무자의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 무조정이 종료된 후 다시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 4 그 밖에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합리적 사유 없이 채무조정을 과도하게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채 무조정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지 않도록 운영 가능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 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41. 채무조정의 처리 (안 제41조)

| 가. 제정 이유 |
|--|
| □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요청을 성실히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채무조정 심사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절차의 요식화 방지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 처리(§41①) |
| ○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견 요청 가능(§41②) |
| □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채무조정을 하려는 경우 채무조정 안을 작성·첨부해야 함(§41③)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응답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채무조정 절차의 요식화 방지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웍~'208웍)」록 우영하여 |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 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42. 채무조정의 효력 (안 제42조)

| 가. 제정 이유 |
|---|
| □ 채무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효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양도시 기 인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안에 개인채무자가 동의시 채무조정의 합의 성립(§42①) |
| □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은 해당 개인금융채권이 제3자에 가양도되더라도 유지(§42②)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채무조정의 효력을 명확히 법규화함으로써 채권양도로 인한 불측의 개인채무자 피해 방지 가능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시오번 제정이 마려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 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43. 채무조정의 종료 (안 제43조)

| 가 | . > | 제 | 정 | 0 | 유 |
|---|-----|---|---|---|---|
|---|-----|---|---|---|---|

□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

나. 제정 내용

□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거나, 채무조정을 하지 않 기로 통지하거나,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안에 개인채무자가 동의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채무조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봄(§43)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무조정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채무조정의 절차와 관련한 이 법의 여러 규제의 적용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 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44. 새무소성의 압의 애세 (안 제44소) 가. 제정 이유 |
|---|
| □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미이행시의 효과 규정 필요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미이행 하거나 그 밖의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 해제 가능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특이사항 없음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

45.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 (안 제45조)

가. 제정 이유

- □ 채권수탁추심 사무는 종래 '채무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신용정보법을 통해 규율('95년 신정법 제정~)
 - 그러나 추심은 '대출실행 연체발생 추심 또는 채무조정 매각 시효완성'으로 이어지는 대출채권 관리절차의 일환이므로, 연체 이후의 관리 일반을 다루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함이 타당
 - ※ 기능 및 목적이 유사한 채권매입추심업의 경우도 함께 규율
- □ 이에 기존 신용정보법(§4, §8)상 채권추심업의 허가 관련 사항을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이과하여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 채권수탁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45①)
- □ 허가받은 사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보고하여야 함(§45③)
 - * 중요사항: 신고 [현행 신정법 시행령 §8] ①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② 상호 등 정관의 변경
 - * 경미사항: 보고 [현행 신정법 시행령 §8] ①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②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받은 내용을 반영 하는 사항
 - ③ 정관의 변경 中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계의 변경, 자구 (字句) 수정 등에 관한 사항
- □ 행정청 재량행위인 허가의 특성상 허가에 조건 부과 가능(§45⑤)
- □ 기존 신용정보법과 내용 동일

<참고: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허가받은 사항 변경시 필요절차 비교>

| 구분 | 필요조치 |
|-----------------------|-----------------|
| ■ 대주주 변경승인 | 사전승인 (법 §48①) |
|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감소 | 사전신고(금융위 수리 필요) |
| ■ 상호 등 정관의 변경 | (법 §45③) |
| ▪대표자 및 임원 변경 | 사후보고(금융위 수리 불요) |
| ■ 정관의 조문체계 변경, 자구수정 등 | (법 §45③) |
| 기타 | 별도조치 불요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존 신용정보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

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6. 허가 요건 (안 제46조)

가. 제정 이유

□ 기존 신용정보법(§5, §6)상 채권추심회사의 허가요건 조항을 소비자 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 □ 채권수탁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요건 충족 필요(§46 ①)하고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46②)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i) 기술보증기금
 - (ii) 한국무역보험공사
 - (iii) 신용보증기금
 - (iv) 신용정보회사가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v) 지역신용보증재단
 - (vi) 금융회사가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②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정성적 심사를 위한 요건으로, 허가업에만 존재하는 요건
 - ③ 사업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전문성을 갖출 것
 - * [현행 신정법 시행령 §6] 상시고용인력 20인 이상 유지의무
 - ④ 5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출 것
 - ⑤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출 것
 - * [현행 신정법 시행령 별표1]
 - (i) 자기자본이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2배 이상
 - (ii) 출자금액이 단순차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출저가 명확할 것
 - (iii)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 저해이력 없을 것
 - (iv)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일이 없을 것
 - ⑥ 임원이 자격요건(§47①)을 충족할 것

- ⑦ 제92조(손해배상의 보장)에 따라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90조, 제91조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의 이행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함(1. 영업보증금 예탁, 2. 보험금의 지급 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 구매, 3. 공제가입)

| 다 | 입법추진과 | 정에서 | 논의되 | 주유내용 |
|-----|-------|-------|-----|-----------|
| -1. | 88127 | 0 111 | レーゼ | 1 44 11 0 |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요건을 채권매입추심업, 채무조정교섭업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진입규제의 합리성 개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허가의 요건) 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 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47. 임직원의 자격요건 (안 제47조)

가. 제정 이유

□ 기존 신용정보법(§27)상 채권추심회사 임직원 자격요건 조항을 이관 하여 채권수탁추심업자 임직원의 자격요건 규정

나. 제정 내용

- □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임직원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되며(§14①),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직을 잃음(§14②)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 단, 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직무 (現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29) 고용은 가능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③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완료 후 5년 미경과자
 - ④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⑤ 이 법,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5년 미경과자
 - ⑥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이 취소된 지 5년 미경과자
 - ⑦ 영업허가 등이 취소된 후 5년이 미도과한 법인의 임직원(허가 취소 등에 책임있는 자로 한정)이었던 자
 - ⑧ 해임 또는 면직(퇴직자에 대한 상당통보 포함) 제재를 받은 자로서 제재일로부터 5년 or 통보일로부터 7년* 미경과자
 - * 상당통보를 받은 날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도과 이후인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7년으로 한정

- □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임원이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됨 (§14③) ▷ 기존 신용정보법과 대부분 동일하나. 형벌 수범 관련 결격기간 요건을 일부 수정* (일반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통일) * (신정법) 금고 이상 실형 집행완료 후 3년 → (소비자신용법) 5년 (신정법) 금융관계법령 위반 특례 없음 → (소비자신용법) 금융관계법령 위반 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후 5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채권수탁추심업자 임직원 자격요건(신용정보법)과 채권매입추심업 자등의 임직원 자격요건(대부업법)은 일원화하지 않고. 기존의 규 제연혁을 존중하여 기존 법률대로 각각 상이하게 존치하도록 함 라. 입법효과 □ 기존의 신용정보법 내용을 대체로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 ※ 참고 조문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8. 대주주의 변경 승인 등 (안 제48조)

가. 제정 이유

- □ 기존 신용정보법(§9)상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시 금융위 승인* 의무를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 * 허가업에서 대주주의 변경은 신규 허가에 상응하는 행위이므로, 금융회사지배구 조법(§31) 등 금융업법에서 금융위 승인을 요함
- ※ (cf) 채권매입추심업 등 등록업은 대주주 변경시 사전승인 대신 사후 보고로 갈음 (타 금융업법상 등록업도 동일)

나. 제정 내용

- □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48①)
 - * 대주주의 정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2)을 준용 : (i) 최대주주 (ii)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iii) 최대주주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 (iv) 그 밖의 주요주주(지분율 10%이상 or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주)
 - 대주주 승인의 요건(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은 시행령*에서 규정 (→ 신규허가시 대주주의 자격요건과 동일)
 - * [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
 - (i) 자기자본이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2배 이상
 - (ii) 출자금액이 단순차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출처가 명확할 것
 - (iii)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 저해이력 없을 것
 - (iv)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일이 없을 것
 - 대주주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48④)하며, 금융위는 해당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 가능 (§48⑤)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기존 신용정보법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검영업무 및 무무업무 (안 제49조) |
|---|
| 가. 제정 이유 |
| □ 기존 신용정보법(§9)상 겸영·부수업무 관련의무를 개인채무자보호 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
| 나. 제정 내용 |
| □ 겸영업무 : 종래 신용정보법에서 겸영을 허용하던 업종*에 대한 겸영을 그대로 허용 (§49①) |
| *「신정법」상 신용정보업,「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회사의 자산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 □ 부수업무 : 종래 신용정보법에서 허용하던 부수업무*를 그대로 허용 (§49②) |
| * ① 채권자 등을 위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② 채권자 위탁을 받아 채무자에게「채권추심법」에 따른 채무확인서 교부 ③ 그 밖에 대통령령(현재는 미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 □ 겸엉·부수업무의 신교내용이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개인채무지 보호를 저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제한 또는 시정명령 가능(§49④)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규 |

모 가능

율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소지를 줄이고 건전한 경영 도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겸영업무)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할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 ⑦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용정보업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0. 이용자보호기준 등 (안 제50조)

가. 제정 이유

- □ '15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자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준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보호감시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의무 도입(대부업법 §9의7)
 - ㅇ 그러나, 신정법상 채권추심업자에는 동 의무 미도입
-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내규를 통한 절차적 통제를 중시*하는 만큼, 이용자 보호기준의 적용대상 및 규율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큼
 - * (예) ① 채권양도절차: 채권양도 내부기준 (§13)
 - ② 채권추심위탁절차: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24)
 - ③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내부기준 (§38)
 - ④ 소멸시효 연장 및 완성 :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15)

나. 제정 내용

- □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함(§50①)
- □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시 조사 등을 하는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함(§50②)
 - 다만, 총자산 또는 영업수익*이 일정규모 이하(시행령 규정)인 업자는 의무면제
 - * 기존 대부업법은 총자산규모로만 의무면제 대상을 판단하였으나, 개인채무자보호 법은 영업수익 기준을 추가
 - ⇒ 자산규모가 영업규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채권수탁추심업의 경우 영업수 익으로 소규모업자를 판단하기 위함

| □ 보호감시인은 자격요건(§50②)*을 충족한 자를 이사회 결의로 임면 (§50③)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함 |
|--|
| * ① 전문성 요건 (i)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자 (ii) 금융 or 법학 석사 이상 소지자로서 유관연구기관 5년 이상 근무자 (iii) 변호사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iv)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로 서 퇴임(퇴직)한 후 5년 경과한 자 ② 자의 임원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보호기준에 포함할 내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50⑤) |
| 공통사항(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보호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위반직원 처리절차 등) 및 업무내용 관련 사항 등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이 법상 연체채권 관리절차 및 개인채무자 보호 의무를 내규화하여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게 됨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 (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영업의 양도 · 양수 등 인가 (안 제51조)

가. 제정 이유

- □ 기존 신용정보법(§10)상 채권추심회사의 영업 양도·양수시 금융위 인가* 의무를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 * 허가업에서 라이센스의 제3자 양도는 신규 허가에 상응하는 행위이므로, 금융위 인가를 요함 (양도 자체가 원천금지되는 업종도 존재)

나. 제정 내용

- □ 채권수탁추심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금융위 인가 필요(§51①)
- □ 영업 양도·양수 등에 대하여 금융위 승인이 있는 경우 허가는 양수자 등에게 이전(§51②) (→양도자 등에 대한 종전 허가는 소멸)
- □ 종전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 년간 양수자 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는 양수인 등에게 절차 계속 가능(단,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불가)(§51③)
- □ 양수도 시 허가요건 및 임직원 자격요건은 준용 (§51④)
- ⇒ 기존 신용정보법상 영업 양수도 등 관련 인가 의무와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기존 신용정보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존 신용정보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2. 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안 제52조)

| 가. 제정 이유 |
|---|
| □ 기존 신용정보법(§10)상 채권추심회사의 휴·폐업 신고 의무를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영업의 휴·폐업시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해야 함(§52①) |
| □ 신고가 적법하면 금융위는 이를 수리(§52②) |
| ⇒ 기존 신용정보법상 휴・폐업 신고 의무와 동일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기존 신용정보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형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기존 신용정보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형 없음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히 |

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

-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 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53. 공고 (안 제53조)

가. 제정 이유

□ 기존 신용정보법(§7)상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허가사항 등 변경시 금융위원회의 공고 의무를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준용하여 기술 함

나. 제정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회사의 허가현황 등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에 알려야 함
 - ① 채권수탁추심업 신규허가(법 §45②)를 한 경우
 - ② 채권수탁추심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법 §49 ①②)한 경우
 - ③ 채권수탁추심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법 §49④)을 한 경우
 - ④ 채권수탁추심업의 영업 양도·양수·분할·합병을 인가(§법51①)한 경우
 - ⑤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52)
 - ⑥ 채권수탁추심업 허가 및 영업 양수·양도 인가를 취소(법 \$83 ①)한 경우
- □ 기존 신용정보법상 공고 의무와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기존 신용정보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 기존 | 신용정보법 | 조문을 | 변경 | 없이 | 이관하는 | 것으로 | 특이사힝 |
|------|-------|-----|----|----|------|-----|------|
| 없음 | | | | | |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 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 3. 제10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 5.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 6.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 7.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54.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 (안 제54조)

| 가. 제정 이유 |
|---|
| □ 기존 대부업법상 매입추심업자의 등록신청 절차(§3)를 개인채무지 보호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54①) |
| □ 등록사항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54②) |
| □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54③)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진입요건 투명화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하다.
-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⑦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변경등록 등)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등록 요건 (안 제55조)

가. 제정 이유

□ 기존 대부업법상 등록요건(§3의5)을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준용 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은 시행 령에 위임
 - ① 법인일 것
 - ②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 ③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을 갖출 것
 - ④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
 - ⑤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이 제60조 제1항 임직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⑥ 최근 5년간 제85조(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1 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⑦ 제92조(손해배상의 보장)에 따라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⑨ 최근 1년간 제66조제1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
- ① 그 밖에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요건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진입요건 투 명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 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 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6. 등록증의 발급 (안 제56조)

| 가. 제정 이유 |
|--|
| □ 기존 대부업법상 등록신청 절차(§3), 등록증의 반납(§3의3)에서의 등록등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조항 신설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증을 교부하고 중요 사항을 등록부에 작성(§56①) |
| □ 등록증 분실·훼손시에는 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아야 함(§56②) |
| □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56③)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포함하여 소비자신용법상 등록업종의 등록 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진입요건 투명화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하다.
-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시·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57. 등록의 갱신 (안 제57조)

| 가. 제정 이유 |
|--|
| □ 기존 대부업법(§3의2)상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등록갱신 조항을 개 인채무자보호법에서 준용함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57①) |
| □ 금융위원회는 등록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 경우 등록증을 교부 하고 중요사항을 등록부에 작성하여야함(§57②) |
| 즉, 채권매입추심업자자는 매 3년마다(=등록갱신 주기) 실질적으로 등록요건 전체에 대한 유지 심사를 받게 됨 |
| □ 금융위원회는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유요기간 만료의 3개월 전까지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유효기간의 만료사실 및 등록갱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함(§57③) |
| □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기존 대부었번 주무은 벼겨 없이 이과하는 거으로 틀이사한 없은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 없은 |
|--------|--------|
| o - Hi | HX 177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 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 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3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 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등록부의 공개 (안 제58조)

가. 제정 이유

□ 기존 대부업법상 등록부의 공개 관련 내용을 개인채무자보호법 에서 준용하여 규율함

나. 제정 내용

□ 금융위원회는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58)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등록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⑤ 시·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9.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교육 (안 제59조)

가. 제정 이유

□ 기존 대부업법(§3의4)상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등록시 교육 이수 관련 사항을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준용하여 적용함

나. 제정 내용

□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신규등록·등록갱신 등 전에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59①)

<참고 : 대부업자 교육 시행주체 및 교육내용(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2의8)>

- ◇ 시행주체 : 시·도지사,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
- ◇ 교육 내용
 -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 2.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4.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
 - 5. 그 밖에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다만,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교육 이수로 갈음 가능
 - * ① 천재지변 ②질병 사고 국외출장 ③교육기관의 인적 물적 사정
- □ 법률 내용은 기존 대부업법상 교육이수 조항과 동일
 - 다만, 시행령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추가규율사항* 까지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구체화 필요
 - * [예시] ① 채무자와의 채무조정협상 절차 ② 채권추심 위탁 및 채권매각시 준수 절차 ③ 채권추심행위 관련 준수절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존 대부업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 임직원의 자격요건

가. 제정 이유

- □ 기존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임직원(§4) 및 고용인 자격요건(§9의5)을 준용하여 대부업자등의 자격요건 규정
- □ 기존 신용정보법(§27)상 채권추심회사 임직원 자격요건 조항을 이관 하여 채권수탁추심업자 임직원의 자격요건 규정

나. 제정 내용(채권수탁추심업자의 내용으로 삭제)

-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되며(§60①),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취임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직을 잃음 (§60③)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 단, 신용정보법령과 같이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직무 (現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29) 고용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검토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③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 년 미경과자
 - ④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⑤ 이 법, 금융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5년 미경과자
 - ⑥ 영업허가 등이 취소된 후 5년이 미도과한 법인의 임직원(허가 취소 등에 책임있는 자로 한정)이었던 자
 - ⑦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폐업한 날부

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⑧ 해임 또는 면직(퇴직자에 대한 상당통보 포함) 제재를 받은 자로서 제재일로부터 5년 or 통보일로부터 7년* 미경과자
- * 상당통보를 받은 날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도과 이후인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7년으로 한정
-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직원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60②)
 - ① 『폭처법』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미경과자
 - ② 제60조 제1항 제3호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i)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 미경과자
 - (ii)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iii)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 미경과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채권수탁추심업자 임직원 자격요건(신용정보법)과 채권매입추심업 자의 임직원 자격요건(대부업법)은 일원화하지 않고, 기존의 규제연 혁을 존중하여 기존 법률대로 각각 상이하게 존치하도록 함

라. 입법효과

□ 기존의 대부업법 내용을 대체로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으로 특이사 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이 법의 규정
-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
-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 8. 삭제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 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1. 업무총괄 사용인 (안 제61조)

가. 제정 이유

□ 기존 대부업법(§5의3)상 업무총괄사용인 선임 의무 관련 조항을 개 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하여 준용하여 적용함

나. 제정 내용

- □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함 (§61①)
 - ㅇ 자산규모 일정 미만인 경우는 제외
- □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15②)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3)>

- 1.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 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 다. 민원의 상담 처리에 관한 업무
-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 2.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 가. 대부계약의 중개에 관한 업무
- 나.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 기존 | 대부업법 | 내용을 | 그대로 | 준용하는 | 것으로 | 특이사항 | 없음 |
|----|-------------|-------------|---|-----|------|-----|------|----|
| 마. | 국회 | 계류법안 | 과 중복 | ·여부 | | | | |
| | 중복 | 법안 없음 | | | | | | |
| บโ | ⊸ н] | - A) =) = 2 | ì , | | | |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①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안 제62조)

가. 제정 이유

- □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과 달리, 대부업법상 대부업등의 경우 종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관련 규제장치가 미비
 - 타 금융업과 같은 금융업무 겸영제한은 없고 등록요건으로서 사행산업 등 불건전 상행위* 겸영제한 규제(現 대부업법 §3의5②)만 존재
 - *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의 겸영금지사업(시행령 §2의11)
 - ①「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 ③「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 ④「방문판매법」에 따른 <u>다단계판매업</u>

| 소비자 | 및 | 거래상대빙 | ·과의 | 이해상 | 충 | 방지를 | 위해 | 채권매 | 입추 | 심업지 |
|------|-----|-------|-----|-----|---|-----|----|-----|----|-----|
| 의 겸영 | 현 및 | 부수업무 | 허용 | 범위를 | 명 | 확화할 | 필요 | | | |

나. 제정 내용

- □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겸영·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62①,②)
 - 겸영업무의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관청의 인가 등이 필 요한 경우 이를 미리 받아야 함
- □ 겸영·부수업무의 제한 또는 시행명령에 관하여는 채권수탁추심 업(§49④)을 준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권매입추심업자 대한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규율 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소지를 줄이고 건전한 경영 도모 가능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생략>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 4. (생략)
-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겸영업무)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할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 ⑦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용정보업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3. 이용자보호기준 등 (안 제63조)

가. 제정 이유

□ 대부업법상 이용자보호기준 관련 규정을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준용 하여 규정

나. 제정 내용

□ 이용자보호기준 마련, 보호감시인 마련의무 및 자격요건 등은 채 권수탁추심업자를 준용(§5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부업법과 동일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

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 (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총자산한도 등 (안 제64조)

가. 제정 이유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차입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불법·과잉 추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입금으로 추심 대상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

나. 제정 내용

- □ (차입총량 규제) 매입추심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로 유지해야 함 (§64①)
- □ (담보조달비율 규제) 채권매입 건별 매입대금 중 매입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 비중(=담보조달비율)이 75%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됨(§64②)
 - * 입법예고했던 법안은 '70%'였으나, 규개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75%로 상향
 - 자체 재원 없이 매입할 자산을 담보로 하는 차입에 전적으로 의존* 하여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 금지
 - * 동 규제가 없을 경우 사실상 누구나 매입재원 없이도 매입채권추심업에 참여 가능 → 영세/부실업체가 과도한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 통제 불가능
 - 대출금융기관이 채권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을 확인하도록 하고 법위반 우려시 자금 대여를 금지(§64③)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담보조달비율(LTV) 규제시 금융권 부실채권 매입수요가 감소하여 부실자산 정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있으나.
 - 오히려 자본력이 우량한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확대 기회가 되므로 우량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평가가 다수

라. 입법효과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과도한 차입위주 재무구조로 인한 회수율 증대 추구에서 발생하는 불법·과잉 추심우려 완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영업의 양도 · 양수 등 신고 (안 제65조)

| 가. 제정 이유 |
|--|
| □ 기존 신용정보법(§10)상 채권추심회사의 영업 양도·양수시 금융위 인가 의무를 채권매입추심업자에도 준용하여 신설함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매입추심회사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금융위 신고 필요(§65①) |
| □ 기존의 등록은 양수자 등에게 이전(§65②) (→양도자 등의 등록은 효력 소멸) |
| □ 종전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 년간 양수자 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는 양수인 등에게 절차 계속 가능(단,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불가)(§65③) |
| □ 양수도 시 등록요건 및 임직원 자격요건은 준용 (§51④)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행정절차상 공백이 있었던 부분을 새로 규율하는 것으로 특이사 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채권매입추심업의 양수도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상 공백 해소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6. 영업의 폐업 신고 (안 제66조)

| 가. 제정 이유 |
|---|
| □ 기존 대부업법상 폐업신고 관련 규정을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준용 하여 신설 |
| □ 무분별한 진출입으로 인한 채무자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절차기 진행중인 경우 폐업신고가 불가하도록 신설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매입추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 필요(§66①) |
| □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 불가(§66②) |
| □ 폐업시 등록증 반납(§66③)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폐업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잠재적 채무자 피해 방지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록 등)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 (안 제67조)

| 가. 제정 이유 |
|---|
| □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관련 사항을 규율할 필요 |
| 나. 제정 내용 |
| □ 채무조정교섭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67①) |
| ㅇ 다만 변호사의 경우 등록 없이 채무조정교섭 가능 |
| □ 등록사항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67②) |
| □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67③)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진입요건 투명화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한다.
-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⑦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변경등록 등)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등록 요건 (안 제68조)

가. 제정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요건을 규율할 필요

나. 제정 내용

-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은 시행 령에 위임(다만 비영리법인인 경우 일부 요건 완화)
 - ① 법인일 것
 - ②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④ 최근 1년간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
 - ⑤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을 갖출 것
 - ⑥ 임원이 제69조 제1항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⑦ 최근 5년간 제87조(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1 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⑧ 그 밖에 채무조정교섭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요건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진입요건 투 명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 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

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 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 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9. 임직원의 자격요건 (안 제69조)

가. 제정 이유

- □ 기존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임직원(§4) 및 고용인 자격요건(§9의5)을 준용하여 대부업자등의 자격요건 규정
- □ 기존 신용정보법(§27)상 채권추심회사 임직원 자격요건 조항을 이관 하여 채권수탁추심업자 임직원의 자격요건 규정

나. 제정 내용

-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임원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서는 아 니 되며(§69①),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③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완료 후 5년 미경과자
 - ④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⑤ 영업허가 등이 취소된 후 5년이 미도과한 법인의 임직원(허가 취소 등에 책임있는 자로 한정)이었던 자
 - ⑥ 해임 또는 면직(퇴직자에 대한 상당통보 포함) 제재를 받은 자로서 제재일로부터 5년 or 통보일로부터 7년* 미경과자
 - * 상당통보를 받은 날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도과 이후인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7년으로 한정
 - □ 제6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완료 후 2년 미경과자는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직원이 될 수 없음 (§69②)

|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음음(§69③) |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
| 라. 입법효과 |
| □ 특이사항 없음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이 법의 규정
-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
-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 8. 삭제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 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 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 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0. 준용규정 (안 제70조)

가. 제정 이유

□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증 발급, 등록 갱신, 등록부 공개, 교육, 겸영 ・부수업무의 신고 등은 채권매입추심업과 같은 등록업으로서 다르 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채권매입추심업 규정을 준용

나. 제정 내용

-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채권매입추심업을 준용
 - 1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증 발급, 재발급 및 대여 금지: 제56조
 - 2 채무조정교섭업 등록의 갱신: 제57조
 - **③**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부 공개: 제58조
 - ◑ 채무조정교섭업 교육: 제59조
 - 5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신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
 - 6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제한 또는 시정명령 : 제49조제4항
 -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제50조. 다만, 채무조정교섭업자 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보호감시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❸ 영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제65조
 - 9 폐업 신고: 제66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 비 | - 7 | 밖의 | 참고시 | l 항 |
|---|-----|----|-----|-----|
| | | |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71.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책임 (안 제71조)

| 가. 제정 이유 |
|--|
| □ 법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자에 대하여 업자가 준수해야 할 책임을 선언적으로 규정 |
| 나. 제정 내용 |
| □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71①) |
| □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채무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71②) |
| □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에 거 짓 또는 잘못된 정보·자료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됨(§71③)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책임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법 취지 달성 유도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참고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하여야 한다.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보장성 상품
-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4) 위험보장의 범위
-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나. 투자성 상품
-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 2) 투자에 따른 위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예금성 상품
-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 대출성 상품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

하 같다)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 이자율 · 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 나.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①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 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1.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 업자"라 한다)인지 여부
- 2.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 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다만, 경미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 4.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 5.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이하 "독립문자"라 한다)를 명칭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 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2.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설명의무 (안 제72조)

| 가. 제정 이유 |
|---|
|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개인채무자와 채무조정교섭 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를 명문화 |
| 나. 제정 내용 |
| □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채무조정교섭 서비스를 통한 채무조정과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자가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수단의 내용을 설명해야 함(§72①) |
| □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무조정교섭 계약의 체결시 채무자에게 다음 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72②) |
| ①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업무 내용 및 절차 |
| ② 계약해제, 해지 사유 |
| ③ 채무조정에 따른 개인 신용의 변동 여부 |
| ④ 수수료 |
| ⑤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
| □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가 제2항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72③)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187 -

라. 입법효과

□ 채무조정교섭계약 체결 전에 개인채무자가 서비스의 내용 및 다른 대안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서비스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적합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한다.
 - 3. 대출성 상품
 -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 나. 신용 및 변제계획
 -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

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 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라. 대출성 상품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 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 이자율 · 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 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 · 행사방법 · 효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되다.
-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다.
-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73. 채무조정에 관한 계약의 체결 (안 제73조)

| 가. 제정 이유 |
|---|
|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개인채무자와 채무조정교섭 계약을 체결할 때계약서와 관련한 규정 필요 |
| 나. 제정 내용 |
| □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와 채무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73)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계약서와 관련한 규율을 명문화하여 악의적 계약 방지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히 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

74.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수료 (안 제74조)

가. 제정 이유

- □ 연체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려는 채무조정교섭업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취 가능한 수수료 상한을 설정
 - 교섭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채무감면의 효과가 반감 되어 채무부담 경감 지원이라는 교섭업의 도입취지 퇴색
 - 외국에서도 채무조정서비스업 등장 초기 과도한 수수료 수취로 채 무자피해가 발생한 바 직·간접적 수수료 규제를 적용중

나. 제정 내용

- □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교섭업무 수행의 대가로 두 종류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74①)
 - * 1) 교섭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교섭수수료)
 - 2) 교섭성공에 따른 채무자의 이득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성공보수(성과수수료)
 - 상기 항목 이외에는 채무자로부터 다른 명목(예: 채무상담서비스 제공)의 보수를 수취하는 행위 금지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본업은 채권자와의 채무조정 중개인 바, 이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채무상담서비스 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
- □ 교섭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합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 이내(구체적 수준은 시행령 확정) (§74②)
- □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조정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선취하는 행위 금지(§74③)

ㅇ 수수료를 선취할 경우 채무자를 위해 합의성립시까지 충실하게 직 무를 수행할 유인이 결여될 수 있음을 고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연체채무자의 불리한 지위를 악용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차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해외의 채무조정교섭 수수료 규제 사례

① 영국: Consumer Credit Act

- o 수수료는 채권자로부터 **채권회수액에 비례하여 수취하는 정률수수료**(Fair Share)와, **채무자로부터 받는 건당수수료(fee, 건당 10~30파운드)**로 구분
 - 정률수수료율은 영리법인의 경우 15~25%, 비영리법인의 경우 10% 내외
- 별도의 수수료상한 규제는 없으나, 정부(Money Advice System)의 재정보조
 를 받으려면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수료수준 등에 대하여 MAS 평가를 받아야
 함
- ② 미국: Uniform Debt Management Service Act

- 별도의 수수료 상한 규제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수취하** 는 영리채무조정서비스업을 다수 卅에서 금지
- 비영리채무조정업자들은 NFCC(전미신용상담협회) 등 협회를 결성하여 **자율적으** 로 수수료율 상한을 통제
 - 통상 채권자(=채권회수액 대비) 또는 채무자(=채무감면액 대비)로부터 15% 내외의 수수료 수취

⑤ 독일 : 연방사회법

- o 모든 채무자조언기관(Schuldnerberatungsstelle)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수 료 상한규제는 없음**
- 다만,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국가인증상담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비영 리법인이어야 하며,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불가능

※ 참고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⑤ 제4항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천분의 1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 ⑥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부과방법, 그 밖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75.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행 (안 제75조) 가. 제정 이유 □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업무 수행 방식을 명문화 나. 제정 내용(채권수탁추심업자의 내용으로 삭제) □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자격있는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업무를 위임 · 대리할 수 없음(§34) ⇒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중복법안 없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이 법의 규정
-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 8. 삭제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 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 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 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6. 연체유도의 금지 (안 제76조)

가. 제정 이유

- □ 채무조정교섭업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규제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
 - 특히, 교섭업자가 연체기간을 고의로 늘리게 하여 연체이자 등 채 무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

나. 제정 내용

□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에게 연체 또는 연체상황의 유지를 강요하거나 유도하여서는 아니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여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 런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 위
 -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생략)

-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5.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 대리 의사표시의 제한 (안 제77조)

가. 제정 이유

- □ 채무조정교섭업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규제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
 - 특히, 교섭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채무자를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

나. 제정 내용

□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에 대한 의사표시 를 대리・위탁받을 수 없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여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 런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 위
 -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생략)

-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5.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개인채무자의 재산보관 금지 (안 제78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

가. 제정 이유 □ 채무조정교섭업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규제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 ○ 특히. 교섭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채무자를 대신하여

나. 제정 내용

□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에 대한 의사표시 를 대리·위탁받을 수 없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여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 런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 위
 -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생략)

-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5.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 가. 제정 이유 | |
|--|-----------|
| □ 채무조정교섭업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형 규제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 | 병위 |
| 특히, 교섭업자가 채권금융기관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개인치자의 권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필요 | H무 |
| 나. 제정 내용 | |
| □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전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됨 | 금 |
|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로서 일부 업무를 수행할 때가능 | ∦는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 특이사항 없음 | |
| 라. 입법효과 | |
|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여 개인채무자 보 및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 | <u></u> 호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 중복법안 없음 |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누여 |

※ 참고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 런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 위
 -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나. (생략)
 -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5.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광고 (안 제80조)

가. 제정 이유

- □ 과장되거나 잘못된 광고로 인해 개인채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광고를 규율할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광고 규제(§20~§22), 변호사법상 광고 규제(§23) 등 참조

나. 제정 내용

- □ (미등록자 광고 금지)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아닌 자의 채무조정교섭 업 광고 금지 (§80①)
- □ 다음 유형의 광고는 채무조정교섭업의 경우 금지(§80②)
- 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②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③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의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 ④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⑤ 다른 채무조정교섭업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⑥ 다른 채무조정교섭업자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①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광고를 규제하여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1. (각 호 생략)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 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조건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4. 대출성 상품
- 가. 대출이자율의 범위·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 나.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⑤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협회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호사법」

- **제23조(광고)**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 하는 내용의 광고
 -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 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가 정하는 광고

81.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 대한 감독 (안 제81조)

| 가. | 제정 이유 |
|----|---|
| | 기존 신용정보법(§45·§47)상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감독 및 기존대부업법상 대부업자등에 대한 감독(§12) 조항을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위임직채권 추심인, 채무조정교섭업자,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조항도 함께 일관되게 규정 |
| 나. | 제정 내용 |
| |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을 관리·감독해야함(§81①) |
| | * 채권수탁추심업자 등 : 채권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 채권매입추심업 자, 채무조정교섭업자, 채권금융기관 |
| | 금융위원회는 감독을 위해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 보고, 자료의 자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가능(§81②) |
| |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사실 확인 요청 가능(§81③) |
| | 이 법에서 규율하는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에 제출의무(§81④) |
| 다.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 입법효과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특이사항 없음

| | 중복법인 | l 없은 |
|-----|----------|---------|
| 1 1 | о — Н ı' | ו אג דו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3. 신용정보집중기관
-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 제4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매 분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⑨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등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부업자의 경우
 - 가. 대부금액
 -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82.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 대한 검사 (안 제82조)

| 가. | 제정 이유 |
|----|---|
| | 기존 신용정보법(§45)상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검사 및 기존 대부업법상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12) 조항을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위임직채권 추심인, 채무조정교섭업자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조항도 함께 일관되게 규정 |
| 나. | 제정 내용 |
| |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지원에게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의 업무와 재신 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음(검사를 하는 자는 증표제시)(§82① |
| | 금감원장은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가능 (§82②) |
| | 금감원장은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이었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해야 함 (§82③) |
| 다.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 입법효과 |
| | 특이사항 없음 |
| 마. |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5조(감독·검사 등) 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⑧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3.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안 제83조)

가. 제정 이유

□ 기존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행정제재(§14, §45⑦, §48) 관련 사항을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준용하여 기술

나. 제정 내용

- □ (채권수탁추심업 허가 또는 인가 취소)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영업 양·수도 인가 취소처분 가능(§83①)
 -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 ② 허가요건(§6) 중 다음의 중요요건을 위반하게 된 경우
 - (i) '금융기관의 50% 이상 출자' 요건(§46①-1호) 미충족 (기존과 동일)
 - 다만, 채권추심업자가 상장회사인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33% 이상 출자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
 - (ii) 자기자본이 허가시 요건(50억)에 미달(§46①-4호) 미충족
 - 단, 사업초기 손실 가능성을 감안하여 영업개시 후 3개 사업년도 동안은 동 의무 면제
 - (ii)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46①-5호)
 - ③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④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가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⑤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 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 정보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삭제 <2013. 5. 28.>
 - 4. 신용정보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6.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7. 삭제 <2013. 5. 28.>
 -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11조제1항 ·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16조에 따른 수집 ·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5.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6. 신용조회회사가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계열회사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한 경우
- 7. 제40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 8.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5조(감독·검사 등)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84.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 (안 제84조)

| 가. 제정 이유 |
|--|
| □ 기존 신용정보법상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관련 사항을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
| 나. 제정 내용 |
| □ 금융위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사유*에 해당시 등록취소 처분 가능(§84①) |
| *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②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거나, 업무정지처분 후 1년 이내에 재차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자행 ③ 채권추심법 제9조 각 호를 위반하여 불법추심 자행 ④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 위반 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하지 아니한 경우 |
| ○ 금융위는 등록취소처분 전에 당사자에 대한 청문* 실시(§84②) |
| * 행정절차법 §22①에 따른 것으로 기존 신용정보법에 기반영 |
| □ 금융위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사유*에 해당시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가능(§42⑤) |
| * ① §23②을 위반하여 추심방문시 정보원, 탐정 등 명칭 사용② §31③를 위반하여 복수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업무수임③ 채권추심법 §12-2호 또는 5호를 위반하여 불법추심 자행 |
| ▷ 기존 신용정보법 규제 내용을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동일하게 이관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기존 신용정보법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⑥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3. 삭 제
 - 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⑦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 삭 제
 - 3.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한 경우
 -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는 인가 를 취소하거나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 문을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85.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안 제85조)

가. 제정 이유

□ 기존 대부업법상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13) 관련 사항을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준용하여 기술

나. 제정 내용

- □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처분 가능(§85①)
 - ① 속임수나 거짓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 ② 등록요건 중 다음의 중요요건을 위반하게 된 경우
 - (i) 인력과 시설요건 위반
 - (ii)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위반
 - (iii) 대부업자등의 사회적 신용요건 위반
 - ③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영업정치 처분 후 3년 이내에 재차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함
 - 채권수탁추심업과의 규제형식 통일을 위해 기존 대부업법 일부 수정
 - ④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미영위
 - ⑤ 소재확인 공고 후 30일 이내 소재확인 불능
 - ⑥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⑦ 그 밖에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등록취소의 절차) 등록취소 사유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함 (§85②) |
|--|
| □ 등록이 취소된 채권매입추심업자는 등록증 반납(§85③) |
| □ (영업정지) 금융위원회는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일부의 정지 처분 가능(§85④) |
| ① 제재대상 법위반 행위(=별표)를 저지른 경우 |
| ② 채권추심법 §5①, §7~§9, §10①, §11~§13 위반 |
| - 공정추심법 중 채권추심자의 준수의무(§36①) 조항(§9, §12 등)은 별표에 포함되나, 이외에도 일부 조항위반이 영업정지 대상 행위로 추가되므로 별도로 기재함 |
| ③ 그 밖에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영업이 정지된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영업정지기간동안 등록증 반납 (§85⑤)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개월 내의 시정명령 및 주의, 경고 조치 가 가능하며, 시정명령 미이행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가능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취지변경 없이 대부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제재요건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법준수의 실효 성 확보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 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 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의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의4.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시·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 ⑤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 3. 직원의 면직 요구
- ⑦ 금융위원회는 퇴임·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 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 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 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86.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방법 (안 제86조)

| 가. 제정 이유 |
|--|
| □ 실무상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소멸 이후에도 여전히 기존의 영업자산을 보유·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 이 경우 법상 등록업자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오히려 소비자피해기 확산될 우려 상존 |
| □ 이에 기존의 거래관계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영업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영업으로 매입한 채권을 등록소멸 후 6개월 이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함 (§86①) |
| ○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위임)가 있는 경우 금융위에 신고하고 처분 하지 않을 수 있음 (§86②) |
| □ 6개월간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오직 제26조에 따른 위탁을 통해서만 가능 (§86③)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등록 소멸 후에도 규제 사각지대에서 영업을 지속하며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 방지 |
| |

□ 중복법안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 1.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7. 채무조정교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 제87조)

가. 제정 이유

□ 신설된 채무조정교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율할 필요

나. 제정 내용

- □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교섭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처분 가능(§87①)
 - ① 속임수나 거짓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 ② 등록요건 중 인력과 시설요건을 위반한 경우
 - ③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영업정치 처분 후 3년 이내에 재차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함
 - ④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미영위
 - ⑤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그 밖에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영업정지)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교섭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 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일부의 정지 처분 가능(§88②)
 - ① 제재대상 법위반 행위(=별표)를 저지른 경우
 - ② 그 밖에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그 밖에 청문, 등록증 반납, 시정명령은 매입추심업 준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제재요건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법준수의 실효 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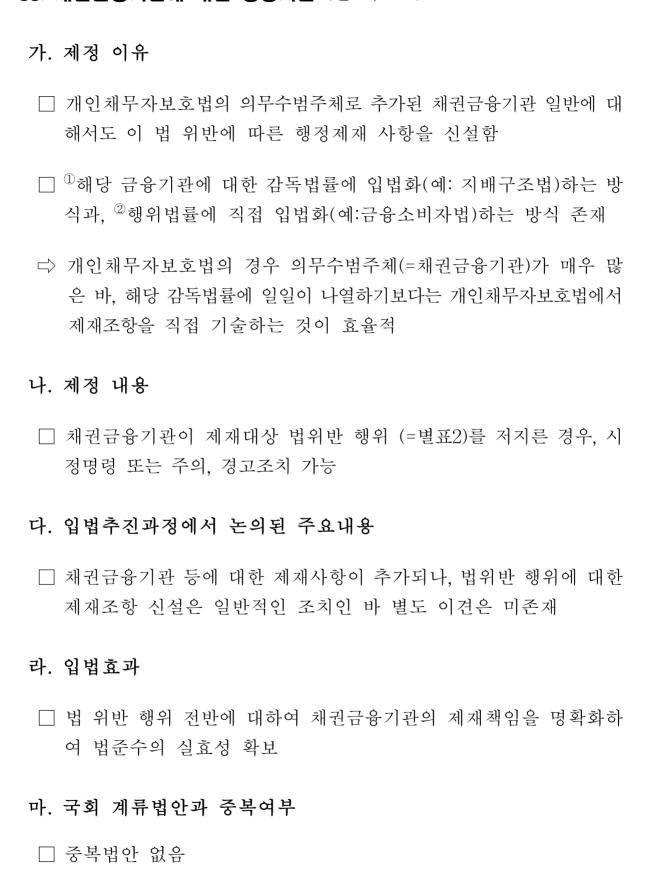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 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 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의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의4.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시·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 시하는 경우
- ⑤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 3. 직원의 면직 요구

- ⑦ 금융위원회는 퇴임·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 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 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 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88.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안 제88조)



| 바 | • . | ユ | 밖의 | 참고/ | 사 항 |
|---|-----|---|----|-----|-----|
| | | | |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89. 임직원에 대한 조치 (안 제89조)

| 가. | 제정 이유 |
|----|--|
| |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필요 |
| 나. | 제정 내용 |
| | 임원의 경우 별표 위반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 가능(§89①) |
| | 직원의 경우 별표 위반시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요구 가능(§89②) |
| |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위반행위에 한하여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직원 으로 간주(§89③) |
| |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각 조치의 내용을 채권수탁추심 업자 등에게 통지 가능(§89④) |
| 다.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임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인 바 별도 이견은 미존재 |
| 라. | 입법효과 |
| | 소비자신용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및 소비자신용 관련업자의 제재책임을 명확화하여 법준수의 실효성 확보 |
| 마. |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 ユ | 밖의 | 참고시 | - 헔- |
|---|---|--------|-----|------|
| | _ | 11 - 1 | 11 |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감독·검사 등)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 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 3. 직원의 면직 요구
 - ⑦ 금융위원회는 퇴임·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 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 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 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90. 손해배상의 책임(안 제90조)

| 가. | 제정 | 0 | 유 |
|-------|---------|----------|-----|
| 71 | 711 74 | \sim 1 | U |
| / F | All All | O | Ť |
| · 1 · | 711 0 | , | - ' |
| | | | |

- □ 채권수탁추심업자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수범주체가 법위반으로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하여 손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인 원채권금융 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ㅇ 수탁자의 법위반 행위에 따른 대외적 배상책임이 원채권금융기관 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 나, 제정 내용 □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이 이 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 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90①) ㅇ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면책 □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이 법 또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개인채무 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90②) □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개인채무 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채권수탁추심업자 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90③)
 - ⇒ 상기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발생의 원인행위자에게 구상 가능(§90④)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 수범주체의 대외적 배상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행위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
 - ㅇ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① 대부 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은 해당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구상권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④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⑦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안 제91조)

가. 제정 이유

- □ 채권금융기관 등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개인채무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90)을 청구 가능하나. 실효성에는 의문
 -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을 위해서는 위법행위와 손해와의 관련성 및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필요한데,
 -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으로 발생 가능한 채무자 피해는 상당수가 정 신적・비물질적 피해*여서 채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음
 - * (예) 추심횟수제한(§20) 위반: 채무자가 채권자의 과잉추심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지만, 이로 인한 피해액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 □ 이에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 없이도 법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일정한 배상액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추진

<참고 : 법정손해배상을 도입 국내・외 사례>

- ① 미국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 채권추심자가 법 위반시 채무자는 \$1,000 이내에서 배상금 및 소송·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청구인의 손해입증 불요)
- ② 신용정보법 : (i)신용정보회사등이 고의·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ii)개인신용정보 분실·유출시 300만원 이내 청구 가능(청구인의 고의·과실 입증 불필요)
- ③ 개인정보보호법 : (i)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로 (ii)개인정보 분실·유출시 300만원 이내 청구 가능(청구인의 고의·과실 입증 불필요)
- ※ 이외 저작권법(1천만원)・상표법(5천만원)・정보통신망법(3백만원) 등에서 인정

나. 제정 내용

□ 개인채무자는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 9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300만원 이하의 손해액으로 법 정손해배상을 청구 가능(§91①)

- 제9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은 불필요
- 청구를 당한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91②)
- □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심리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91③)
- □ 법정손해배상 청구의 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전까지 제90조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청구의 訴로 변경 가능(§91④)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법정손해배상 심리시 손해액 산정의 고려요소*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 (예시) (i)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ii)위반행위의 기간·횟수, (iii)위반행 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iv)소송청구 실비용 등
 - 그러나, 법정손해배상의 도입 취지는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을 요하지 않고 법위반 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배상액을 인정하라는 것 이므로, 배상액 산정시 세부적인 고려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크지 않음
 - □ 기존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의 고려요소(=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기술함

라. 입법효과

- □ 연체채무자가 채권자의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채무자 구제효과 확대
- □ 채권자가 법정손해배상 피소를 피하기 위해 분쟁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사적합의를 시도하는 간접적 효과도 기대 가능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u>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u>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 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1. 삭제
 - 2. 삭제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삭제

92. 손해배상의 보장 (안 제92조)

가. 제정 이유

- □ 금융회사의 소비자 배상책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금 ・배상책임보험・준비금* 등이 있으나, 대부분 한계 존재
 - *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여전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전자금융업 등 상당수 업종이 '배상책임보험 가입 or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중 擇1을 의무화
 - ㅇ (자본금) 진입자본금이 낮은 경우 충분한 배상재원 확보 불가능
 - (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자(=금융회사)에게 귀책사유(예:고의, 형사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미지급되어 배상책임 이행이 불확실
 - (배상준비금) 통상 외부예치의무가 없음(사실상 자본금과 동일) → 실제 배상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동성 형태로 존재할지 불확실
- □ 반면, 대부업(대부업법)·보험대리업(보험업법)의 경우 ①보증금의 외부예치 또는 ②단순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므로 배상재원의 안정적 확보 가능
 - * 가입자의 대외적 배상책임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 가입자의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히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고 사후 구상권 행사
 - □ 기존 대부업법(§11의4) 내용을 확대 적용하여 영업보증금 외부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

나. 제정 내용

- □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일정한 금융분쟁조정(시행령 사항)에 따른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92①)
 - ㅇ 영업보증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구매, 공제가입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항의 조치 유지 필요

-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금감원 분쟁조정 권고 이행을위해 필요한 경우 적립금 인출 및 보험청구 가능
- 소비자분쟁 유발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차등화될 것이므로, 업자 스스로 건전한 영업관행을 추구할 유인 제공

<참고: 국내・외 보증보험증권 운영 사례>

- ▶ [대부업자 관련] 서울보증보험의 인허가보증보험 증권
- [가입자] 대부업자
- [피보험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금융소비자)
- [보험금 지급대상]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손해
- [보험금 지급제외] 거래상대방(금융소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 [보장금액 및 보장기간] 3년(대부업자의 등록기간) 동안 누적 5천만원 (※ 5천만원 범위에서는 횟수에 관계 없이 보장)
- ▶ [미국 Surety Bond]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금융회사의 배상채무 전반에 대하여 가입금액 범위에서 이행을 보장

<참고 : 현행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업자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액>

- [신용정보법] 채권추심업자(5억원)
- [대부업법] 금융위 등록대부업자등(0.5억원), 지자체 대부업자등(0.1억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기존 | 대부업법 | 내용을 | 확대 | 적용하는 | 것으로 | 특이사항 | 없음 |
|----|----|------|-----|----|------|-----|------|----|
| 라. | 입법 | 효과 | | | | | | |

□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대외적 배상재원을 명확히 확보하여 불법 행위 발생시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u>
-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1천만원
-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
-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거래규모,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 ③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확정판결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험업법」

-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 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 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 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 1.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 2.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 3.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⑤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이 <u>그 평가액의</u> 변동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 결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3. 행정처분 등의 공표 (안 제93조)

가. 제정 이유

- □ 기존 대부업법(§16의2)상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실의 공개의무 조항을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 금융이용자가 행정제재 등을 받은 업자 내역을 확인하고 추후 거래 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

나. 제정 내용

- □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해야 함 (§93)
 - ①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
- ⇒ 기존에 대부업법상 대부업자등에만 적용하던 사항을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기존 대부업법과 내용상 동일한 조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존 대부업법과 내용상 동일한 조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시·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상호 (안 제94조)

가. 제정 이유

□ 기존 대부업법(§5의2) 및 신용정보법(§12, §41)상 대부업자 및 채권 추심회사의 상호 등의 조항을 참고하여 상호 관련 제한사항을 규정

나. 제정 내용

- □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문자를 상호에 포함하도록 함(§94①)
 - 1 채권수탁추심업자 : 신용정보 (⇨기존과 동일)
 - 2 채권매입추심업자 : 추심 또는 채권회수
 - 현재는 대부업자로서 "대부" 상호 사용의무가 있으나, 업종이 분리되는 만큼 대부업과의 혼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의무상호 부여
 - 채권의 매입 속성을 강조할 경우 '자산관리' 등의 상호가 가능하나, 이 경우 자산유동화기구 등 채권매입기구와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바 추심속성에 방점을 두어 상호의무 설정
 - ❸ 채무조정교섭업자 : 채무조정 또는 채무관리
 -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중개라는 고유 속성을 채무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호의무 설정

| □ 해당업자의 | 타이에 | 대화 | 며이대여 | 글z](80/②) |
|---------|-----|--------|-----------|---|
| | | ~ i' | 0 - 1 - 1 | \Box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상호사용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상호를 통해 해당업자의 기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상호 등)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①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 등록수수료 등 (안 제95조)

□ 중복법안 없음

| 가. 제정 이유 |
|--|
| □ 기존 대부업법(§17)상 대부업자의 등록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관련 사항을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 에 준용하여 적용함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매입추심업자 또는 채무조정교섭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일정수수료*를 납입해야 함(§95①) |
| *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영업점포당 10만원 (단, 관할 시 • 도별로 금액인하 가능) |
| □ 또한 금감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검사수수료*를 납입해야 함 (§12②) |
| *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업체별 대부잔액의 0.1% 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단, 관할 시·도별로 상한선 내에서 자율결정 가능) |
| □>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기존 대부업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등록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96. 권한의 위임·위탁 등 (안 제96조)

| 가. 제정 이유 |
|---|
| □ 기존 대부업법(§18의7) 및 신용정보법(§49)상 금융위원회 권한의 타기관 위탁 관련 사항을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힘 |
| 나. 제정 내용 |
| □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금감원장,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위탁 가능(§96①②) |
| □ 업무를 위탁받은자는 그 업무처리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96③)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기존 대부업법 및 신용정보법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기존 대부업법 및 신용정보법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ㅎ |

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97. 규제의 재검토 (안 제97조)

| 가. 제정 이유 |
|---|
| □ 규개위 심사 과정에서 채권수탁추심업자의 기존 업무범위로서 차 무조정 업무를 잔존시킬 것을 권고 |
| 나. 제정 내용 |
| □ 채권수탁추심업의 채무조정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규개위 심사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규개위 심사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규개위 심사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98~101. 벌칙 (안 제98~101조)

가. 제정 이유

- □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행위 중 법규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벌칙 부과 대 상으로 열기함
 - 벌칙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4단계*로 구분(=기존 대부업법의 벌칙체계와 동일)
 - * ① 5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 ②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 ③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④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 법제처 법령운영규정상 행정벌(벌칙 and 과태료) 부과원칙>

- ◇ 벌칙 :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 ◇ 과태료 :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에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
- ◇ 과태료 이외의 행정제재 : 훈시적 규정 위반 또는 굳이 행정벌을 부과하지 않아도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없는 경우.

나. 제정 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행위 중 다음 각 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차등화하여 벌칙을 부과

| 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 | 기존조항 | 벌칙 | |
|--------------------------------|----------|------------------|--------------------------------------|--|
| 무허가·무인가 채권수탁추심업 영위 | §45①,51① | 신정법 §4① | 5년이하 징역 or 10,000만원 ¹⁾ | |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영업양수도인가 취득 | §45①,51① | 신정법 §4②, §10① | 5년이하 징역 or 10,000만원 ¹⁾ | |

| 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 | 기존조항 | 벌칙 |
|--|------------------------|---------------------------|--------------------------------------|
| | | | |
| 무등록/등록갱신/양수도 신고 없이 채권매입추심업 영위 | §54①,§57①, §65① | 대부업법 §3, §3의2 | 5년이하 징역 or 10,000만원 ¹⁾ |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갱신, 양수도 인가 | §54①, §57① §65① | 대부업법 §3, §3의2 | 5년이하 징역 or 10,000만원 ¹⁾ |
| 수탁추심업자 이외의 자에 채권추심 위탁 | §26 | 신정법 §27의2 | 5년이하 징역 or 5,000만원 |
| 무등록/등록갱신/양수도 인가 없이 채무조정교섭업 영위 | §67①, §70-2호, §70-8 | 신설 | 5년이하 징역 or 5,000만원 |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갱신, 양수도 인가 | §67①, §70-2호 §70-8 | 신설 | 5년이하 징역 or 5,000만원 |
| 채권금융기관이 미등록업자에 대한 채권매각 | §10② | 대부업법 §9의4③ | 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 |
| 채권추심자가 정보원, 탐정 등 명칭사용 추심 | §23② | 신정법 §40①-v | 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 |
|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미등록업자로부터의 채권 양수 | §33 | 대부업법 §9의4① | 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 |
| 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에게 라이센스 대여 | §56③ | 대부업법 §5의2⑤ 신정법 §41① | 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 |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타인에게 라이센스 대여 | §70-1호 | 신설 | 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 |
| 개인채무자에게 연체 또는 연체상황의 유지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자 | §76 | 신설 | 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 |
| 개인채무자를 대리·위탁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자 | §77 | 신설 | 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 |
| 미등록업자의 광고 | §80① | 신설 | 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 |
|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업무정지기간에 업무영위 | §83③ | 신정법 §14② | 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 |
| 채권매입추심업자가 | §85 ④ | 신정법 §14② | 3년이하 징역 or |

| 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 | 기존조항 | 벌칙 |
|---|-------------------------------------|---------------------------|--------------------------------------|
| 업무정지기간에 업무영위 | | | 3,000만원 |
| 미등록 수탁, 매입추심업자가 상호 표시 위반 | §94 _② | 신정법 §12 대부업법 §5의2④ | 3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 ²⁾ |
| 채권수탁추심업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에게 라이센스 대여 | §94 ③ | 대부업법 §5의2⑤ 신정법 §41① | 3년이하 징역 or 3,000만원 |
|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제1항 각 호 이외의 자를 통하여 추심을 하는 경우 | §30① | 신정법 §27⑤ | 1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
|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추심대상 채권 외 채권추심 | §30② | 신정법 §27⑤ | 1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
|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미등록 위임직채권추심인 통해 추심업무 영위 | §31① (②항은 단순 등록수수료라 해당 없음) | 신정법 §27③ | 1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
|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소속 추심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추심행위 | §31 _③ | 신정법 §27④ | 1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
| 대주주변경 승인 없는 수탁추심업자 지분취득 | §48①,② | 신정법 §9①, ② | 1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
| 수탁추심업자의 주식처분명령 위반 | §48 _③ | 신정법 §9③ | 1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
|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업무정지 중 업무영위 | §84③ | 신정법 §27⑦ | 1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
| 과거의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86① | 신설 | 1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업무정지기간에 업무영위 | §87 ₂ | 신설 | 1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
| 미등록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상호 표시 위반 | §94 _② | 대부업법 §5의2④ | 1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타인에게 라이센스 대여 | §94③ | | 1년이하 징역 or 1,000만원 |

- 1) 기존 5천만원 →1억원 상향 (20.6.29 대부업법 개정안 반영)
- 2) 대부업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채권수탁추심업자와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한 처분을 과태료 → 벌칙으로 상향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 특이사항 없음 |
| 라. 입법효과 |
|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중요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완비함으로써 규제수범자인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 및 채권금융기관 등의 법준수 실효성을 확보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 중복법안 없음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 |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등을 한 자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0조(벌칙) ①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 3. 삭제
-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 4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 5.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 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 5의3.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
- 7.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의2.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8.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 1의2.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 1의3.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 1의4.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 1의5.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 3의2.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 5.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

- 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된 자 1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 8.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 9.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 102. 병과 (안 제102조) | |
|-------------------------------|----------|
| 가. 제정 이유 | |
| □ 벌금과 징역의 병과를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u>의</u> |
| 나. 제정 내용 | |
| □ 벌금과 징역의 병과를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u>}</u>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 □ 벌금과 징역의 병과를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u>}</u> |
| 라. 입법효과 | |
| □ 특이사항 없음 | |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중복법안 없음

103. 양벌규정 (안 제103조)

가. 제정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행위 발생시, 직접 법위반 행위자 이외에 그 사용자(使用者)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제정 내용

-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대상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경우에는 면책됨
- ⇒ 벌칙 조항이 있는 모든 실정법에서 동일한 형태로 양벌규정 삽입

<참고 : 양벌규정의 단서조항 삽입 배경>

- ◇ 종래 양벌규정은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고의나 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일률적으로 병과 가능한 것으로 기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4. 과태료 (안 제104조)

가. 제정 이유

- □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행위 중 법규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열기함
 - * 벌칙 대상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 행위를 과태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 '경미성'의 판단기준은 상대적
 - 과태료 수준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4단계*로 구분(=기존 신용 정보법의 벌칙체계와 동일)
 - * ① 5천만원 이하 ② 3천만원 이하
 - ③ 2천만원 이하 ④ 1천만원 이하

나. 제정 내용

□ 소비자신용법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 부과

| 내용 | 개인금융채권 관리법 | 기존조항 | 과태료 |
|----------------|------------------|----------------|-----------|
|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 | | |
| 따라 소멸시효 중단조치 | §14 | 신설 | 5,000만원 |
|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자 | | | |
| 위임직채권추심인이 | §32 | 시저버 \$27② ; | 5,000만원 |
| 추심관련 규율 위반 | 제2호가목 | 신정법 §27⑨-i | 5,000단편 |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 | 대부업법 | |
|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 §34 | _ | 5,000만원 |
| 업무위임 및 대리 | | §9 의 5② | |
| 채권수탁추심업자의 | | | |
| 허가받은 사항 일부변경시 | §45 _③ | 신정법 §8① | 5,000만원 |
|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 | | |
|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영업 | §52① | 신정법 §10④ | 5,000만원 |
| 휴·폐업시 신고의무 위반 | 3521) | ESE 310(4) | 5,000 년 년 |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 § 54② | 대부업법 §5① | 5,000만원 |

| 내용 | 개인금융채권 관리법 | 기존조항 | 과태료 |
|----------------|------------------|-----------------------|-------------|
| 등록사항변경 위반 | | | |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 \$000 | 대부업법 | г оооПF 0I |
| 결격사유 있는 직원 채용 | §60 ^② | §9 의 5① | 5,000만원 |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 | | - aaa El Ol |
| 폐업신고 위반 | §66① | 대부업법 §5② | 5,000만원 |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 | | |
| 등록사항변경 사후등록 위반 | §67 _② | 신설 | 5,000만원 |
| 채무조정교섭업자의결격사 | | | |
| 유 있는 직원 채용 | §69 ^② | 신설 | 5,000만원 |
| | | | |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 §70-9호 | 신설 | 5,000만원 |
| 폐업신고 위반 | | | |
| 임직원이 아닌 자를 | §75 | 신설 | 5,000만원 |
| 통해서 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개인채무자의 금전 등을 | §78 | 신설 | 5,000만원 |
| 보관·예치한 자 | | | , |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 §80 ₂ | 신설 | 5,000만원 |
| 광고 위반 행위 | | | , – – |
| | | 대부업법 | |
| 감독상 명령 위반 | §81 _② | §12①,⑦ | 5,000만원 |
| | 3012 | 신정법 | 5,000 년 년 |
| | | §45 ₂ ,3,4 | |
| 업무보고서 미제출 또는 | | 신정법 §47 | -1.01 |
| 거짓작성 | §81 <u>4</u> | 다부업법§12⑨ | 5,000만원 |
| 12.10 | | 신정법 | |
| | | | |
| 금감원 검사 및 요구를 | §82 <u>1</u> 2 | §45②,③,④ | 5,000만원 |
| 거부, 방해,기피 | | 대부업법 | , |
| | | §12②,③ | |
| 채권금융기관이 아직 | | | |
| 채무이행의 기한이 | \$74 | 시서 | 2 UUUUF 01 |
|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 §7① | 신설 | 3,000만원 |
| 대하여 연체가산이자 부과 | | | |
| 채권금융기관이 양도금지 | 6400 | 1114 | 2.022.01 |
| 채권을 양도한 경우 | §10 _① | 신설 | 3,000만원 |
| 채권추심자가 추심제한 | 640 | 1111 | 2.022.01 |
| 채권을 추심한 경우 | §18 | 신설 | 3,000만원 |
| 위임직채권추심인이 | §32 | | |
| 추심관련 규율 위반 | 제2호나목 | 신정법 §27⑨-ii | 3,000만원 |
| 채무조정 거절 사유 외의 | · 17 | | 3,000만원 |
| 사유로 채무조정 요청의 | §40 | 신설 | J,000 년 년 |
| | | | |

| 내용 | 개인금융채권 관리법 | 기존조항 | 과태료 |
|--|-----------------------------|------|-----------------------|
| 접수를 거부한 자 | | | |
|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이외의 다른 대가를 수취한 자 | §74① | 신설 | 3,000만원 |
|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자 | §74 _② | 신설 | 3,000만원 |
| 개인채무자로부터 합의 성립전 성과수수료를 수취한 자 | §74③ | 신설 | 3,000만원 |
|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 및 그 밖의 대가를 수취한 자 | §79 | 신설 | 3,000만원 |
|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한 경우 | §86 ③ | 신설 | 3,000만원 |
| 주택경매 예정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한 후 10영업일이 도과하기 전에 경매를 신청 | §8①,③,④ | 신설 | 2,000만원 |
| 채무조정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 | §8 ⑤ | 신설 | 2,000만원 |
|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를 위반하여 하지 않거나,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도과하기 전에 채권을 양도 | §11①, ②, ③ | 신설 | 2,000만원 |
| 소멸시효 완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16 | 신설 | 2,000만원 |
| 1주일 7회이상 추심연락 | §20① | 신설 | 2,000만원 ¹⁾ |
| 추심의 유예를 위반하여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심연락을 취한 경우 | §21 | 신설 | 2,000만원 |
| 특정 추심방법의 제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22② (①항은 개인채무자의 요청권) | 신설 | 2,000만원 |
| 추심위탁 예정 사실을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지 | §25 | 신설 | 2,000만원 |

| 내용 | 개인금융채권 관리법 | 기존조항 | 과태료 |
|---|------------------|---------------|---------|
| 않은 경우 | | | |
| 개인채무자 연체시 채무조정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자 | §36② | 신설 | 2,000만원 |
| 채무조정 심사 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 §41 _③ | 신설 | 2,000만원 |
| 계약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자 | §72② | 신설 | 2,000만원 |
| 개인채무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72③ | 신설 | 2,000만원 |
| 개인채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미교부한 자 | §73 | 신설 | 2,000만원 |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19 | 신설 | 1,000만원 |
| 채권추심자의 소속, 성명 명시의무 불이행 | §23① | 대부업법 §10의2 | 1,000만원 |
|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추심관련 규율 위반 | §32 제1호 | 신설 | 1,000만원 |
| 채무조정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지 않은 자 | §36① | 신설 | 1,000만원 |
| 수탁추심업자의 임원이 금융위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 상무 겸직 | §47 _③ | 신정법 §13 | 1,000만원 |
| 채권수탁추심업자가 겸영업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 §49① | 신정법 §11① | 1,000만원 |
| 채권수탁추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겸영 및 부수업무 제한·시정명령 불응 | §49 ④ | 신정법 §11의2® | 1,000만원 |

| 내용 | 개인금융채권 관리법 | 기존조항 | 과태료 |
|--|------------------|-----------------|---------|
| 등록증 분실·훼손 신고 미수행 | §56 ^② | 대부업법 §3⑦ | 1,000만원 |
| 채권매입추심업자가 겸영업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 §62① | 신설 | 1,000만원 |
|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 §62② | 신설 | 1,000만원 |
| 채권매입추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겸영 및 부수업무 제한・시정명령 불응 | §62③ | 신설 | 1,000만원 |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폐업시 등록증 미반납 | §66 ④ | 대부업법 §3의3①,② | 1,000만원 |
| 채무조정교섭업 등록증 분실·훼손신고 미수행 | §70-1호 | 신설 | 1,000만원 |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겸영업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 §70-5호 | 신설 | 1,000만원 |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 §70-5호 | 신설 | 1,000만원 |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금융위원회의 겸영 및 부수업무 제한·시정명령 불응 | §70-6호 | 신설 | 1,000만원 |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폐업시 등록증 미반납 | §70-9호 | 신설 | 1,000만원 |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등록취소시 등록증 미반납 | §87③ | 신설 | 1,000만원 |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영업정지시 등록증 미반납 | §87③ | 신설 | 1,000만원 |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등록취소시 등록증 미반납 | §87③ | 신설 | 1,000만원 |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영업정지시 등록증 미반납 | §87③ | 신설 | 1,000만원 |

¹⁾ 채권추심법에서 개별 추심행위규제 위반(예:야간연락, 반복연락, 주변인에게 채무사실 공표 등)은 3천만원이하 벌금임을 감안

- 2) 종전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공정채권추심법 위반만 과태료(채권수탁추심업자) 사유로 두었으나, 동일 내용을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유로 확대
- 3) 기존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등 외 일반 여신금융기관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소비자신용법이 금융소비자법과 대등한 일반법임을 감안하여 금소법과 마찬가지로 채권금융기관도 제재대상에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비자신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 조항을 완비함으로써 규제 수범자인 채권금융기관 및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법준수 실효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 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 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삭제
-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사등이 부과·징수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 · 신용조사·개인신용평가·신용관리·마이데이터(MyData)·채권추심 또는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 3. 제19조를 위반한 자
- 4.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 4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 4. 제21조를 위반한 자
-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아니한 자
-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자
-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 3. 삭제

-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 6. 제20조의2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 9. 제31조를 위반한 자
- 10. 제32조제3항·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자
-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3. 삭제
- 14. 삭제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① 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